

- Atkins H., Eldridge on Marine Policies, 3rd ed., Butterworth & Co. Ltd., London (1938)
- Brown R.H., Analysis of Marine Insurance Clauses, Book 2, 1st ed., Witherby & Co. Ltd. (1983)
- Mustill M.J. & Gilman J.C.B.,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II, 16th ed., Stevens and sons Ltd., London (1981)
- Lambeth R.J.,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5th ed., Macdonald & Evans Ltd., London (1981)
- Dover V., A Handbook to Marine Insurance, 8th ed., Witherby & Co. Ltd., London (1982)
- Ivamy E.R. Hardy, Marine Insurance, 4th ed., Butterworths Insurance Library, London (1985)
- Buglass L.J., Marine Insurance and General Average in the United States, 2nd ed., Cornell Maritime Press, Centreville, Maryland, (1981)
- Brown R.H., Marine Insurance-The Principles, 4th ed., Vol.1, Witherby & Co. Ltd., London (1978)
- Wilford M., Coghlin T., Healy N.J., Time Charters, Lloyd's of London Press Ltd., London (1978)
- Ivamy E.R. Hardy, Casebook on Insurance Law, 3rd, ed., Butterworths, London (1977)

定期傭船者 의 法的 地位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Time Charterer

金 光 仁

Kwang-Svg Kim

.....〈 目 次 〉	
Abstract	第4章 主要 標準約款上 定期傭船者의 地位의 實證的 分析
第1章 序 論	第1節 序 言
第1節 研究의 目的	第2節 船舶所有者에 대한 定期傭船者の 主要義務 (對內的 責任)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第3節 定期傭船者의 對外的 責任과 관련된 主要 約款
第2章 定期傭船契約의 意義	第4節 結 語
第1節 僑船契約의 概念	第5章 定期傭船者의 對外的 責任에 관한 具體的인 事例의 考察
第2節 定期傭船契約의 概念	第1節 序 言
第3節 定期傭船契約의 效用性	第2節 定期傭船者의 對外的 責任에 관한 具體的인 事例의 考察
第3章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立法例 및 學說과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	第6章 要約 및 結論
第1節 序 言	參考文獻
第2節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立法例와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	
第3節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學說과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Time Charterer

by Kim, Kwang-Sug

Department of Maritime Law

Th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Pusan, Korea

A time charter means that the shipowner agrees with the time charterer to render services for a named period by his master and crew to carry goods put on board his ship by or on behalf of the time charterer.

Therefore, the point of difference between the demise charterer and the time charterer is that the demise charterer uses only the ship of the shipowner, but the time charterer uses the ship with the shipowner's master and crew. Accordingly, in the time charter the possession of the ship is to the shipowner.

A time charter derives from the Lübeck maritime law or the Visby maritime law, but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time charter developed for the carriage of trees or ores in the Baltic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Time Charterer

by Kim, Kwang-Sug

*Department of Maritime Law
Th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Pusan, Korea*

A time charter means that the shipowner agrees with the time charterer to render services for a named period by his master and crew to carry goods put on board his ship by or on behalf of the time charterer.

Therefore, the point of difference between the demise charterer and the time charterer is that the demise charterer uses only the ship of the shipowner, but the time charterer uses the ship with the shipowner's master and crew. Accordingly, in the time charter the possession of the ship is to the shipowner.

A time charter derives from the Lübeck maritime law or the Visby maritime law, but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time charter developed for the carriage of trees or ores in the Baltic Sea after 1850'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legal status of the time chart-

erer (responsibilities for the shipowner and liabilities for the third party).

The legal status of the time charterer is questioned, becaus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time charterer is introduced in relation with the shipowner in case that the time charterer contracted with the third party as the subject of carriage.

Todays, the countries like England, America, Germany, Japan, Korea, have no provisions of the time charter. Therefore the legal status of the time charterer is in accordance with the theories and the cases. And in shipping practice, the Standard Form (like Baltime Form or NYPE Form) of the time charter is used.

Accordingly, in this paper I aim to study the legal status of the time charterer through the theories, the Standard Form, the cases and the laws of the time charter.

This paper is made up of six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I explained the purpose, the category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In the second chapter, I explained the concept of the charter party, the time charter party and the efficiency of the time charter.

In the third chapter, I explained the legal status of the time charterer through the theories of our country and other

countries like Anglo-America, Germany, France, Japan, and the
statuted countries' laws of the time charter. Also I criticized
the theories.

In the fourth chapter, I analyzed the legal status on the
important clause of the Standard Form to classify with the in-
ternal responsibilities and the external liabilities.

In the fifth chapter, I examined the legal status through
the concrete cases for the external liabilities of the time
charterer.

We may conclude from the foregoing study as follows:

The time charter party is a sort of carriage contract that
combined the shipowner's rights and obligations and the time
charterer's. Therefore, the liabilities of the time charterer
will have to be decided according to the thorough analysis of the
Standard Form and the formed cases. And I think, the provisions
of the time charter have to be inserted into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오늘날 바다를 무대로 하고 船舶을 運送手段으로 하여 전개되는 海上企業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核心을 이루는 海上運送에 있어서 運送의 形態도 다양¹⁾하게 되고 그에 따른 運送人²⁾의 責任도 그 내용면에서 복잡하게 되었다.

海上運送形態 중의 하나가 價船에 의한 것인데, 그 중에서 定期價船은 19세기 중엽부터 發達하였다.³⁾

定期價船契約이란 船舶所有者가 船員이 떨린 船舶을 一定期間 價船者에게 이용시키고 價船者는 그 對價로서 期間으로 定한 價

1) 運送의 형태는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의 運送의 형태는 우리 商法上의 분류처럼 物件運送과 旅客運送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海上運送의 발달에 따른 형태를 의미한다. 즉, 船舶所有者 자신이 運送인이 되어 運送을 하던 형태를 벗어나 船舶賃貸借와 價船에 의한 運送의 형태를 의미하며, 오늘날은 자기 소유의 船舶없이 海上運送을 하는 이른바 NVOCC (Non-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2) 우리 商法은 運送人이라는 표현대신 船舶所有者(商法 746條)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運送人中心主義가 아닌 船舶所有者中心主義임을 나타내고 있다.

3) 定期價船은 海運經營形態가 급격히 발전하던 1850年代에 목재 및 광석의 운송을 위하여 영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의 견해이다. 孫珠瓊, 全訂增補版商法(下), 서울, 博英社, 1987, 496面

船料를 支給할 것을 約定하는 契約인데, 나라에 따라서는 法에 明文의 規定을 두는 경우도⁴⁾ 있으나 영미,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은 定期傭船에 관하여 明文의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船舶賃貸借에 관하여는 現行 商法(765條 및 766條)에 明文의 規定이 있으나 傭船에 관하여는 航海傭船에 대한 規定이 있을 뿐(商法 780條 이하), 定期傭船에 관하여는 規定하고 있지 않다. 實務上으로는 定期傭船에 의한 海上運送의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나⁵⁾ 定期傭船契約에 관하여 成文法規가 없고 成文法規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任意法規인 것이 원칙이므로 契約當事者 사이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定期傭船者は 일반적으로 傭船한 船舶에 自社의 旗를 게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外觀上 第3者에게 船舶所有者로誤認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定期傭船契約의 사실을 모르고 있는 第3者は 定期傭船者와 締結한 運送契約의 履行過程에 서 問題가 발생하였을 때 定期傭船者는 船舶所有者로誤認하여 반종류 問題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定期傭船者の 法的 地位를 규정하는 데 있어 第3者에 대한 責任의 主體가決定될 수 있게 되다.

그리고 定期傭船者の 法의 地位는 定期傭船契約의 法의 性質을 아

4) 후술하는 바와 같이 定期傭船에 관하여 네덜란드, 아태리, 프랑스, 소련, 스웨덴처럼 明文의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다. 第3章 第2節 참조.

5) 그 이유에 대하여는 第2章 第3節, 定期傭船契約의 效用性 참고.

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리解釋될 수 있기 때문에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에 대한 分析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나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은 추상적인 概念속에서 定立되는 것은 아니며 實質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定期傭船에 관한 標準契約書式 (Standard Form) 内容들의 철저한 分析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論文은 運送法上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定期傭船契約에 있어서 먼저 定期傭船契約의 性質을 分析하여 定期傭船契約에 대한 올바른 解釋方向을 提示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 특히 第3者에 대한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를 명확히 밝히는데 그 目的이 있다.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定期傭船契約은 海上物件運送뿐만 아니라 스포츠, 科學, 海底探査, 레크레이션, 衛生, 檢疫, 牽引, 海難救助,沈沒物 引揚 등에도 이용될 수 있다.⁶⁾

이 論文은 위에서 언급한 定期傭船契約이 이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目的 중에서 海上物件運送契約을 중심으로 한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⁷⁾를 研究의 범위로 정하였다.

6) 후술하는 소련 海商法 第1條 참조.

7) 물론 뒤에서 설명하듯이 定期傭船者가 자기 貨物을 運送하기 위하여 期間을 중심으로 船舶을 定期傭船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에 관한 研究

研究의 方法은 外國의 立法例 및 현재 全世界的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는 定期傭船契約에 대한 標準契約書式의 實證的 分析과 定期傭船契約에 대한 學說 및 英美的 判例를 分析·檢討하는 것으로 하였다.

論文의 構成을 살펴보면, 第1章은 序論으로서 研究의 目的,範圍, 方法 및 構成을 設定하였고, 第2章에서는 價船契約의 一般的인 概念을 考察한 뒤 定期價船契約의 意義를 살펴보았다.

第3章에서는 定期價船契約에 관한 네덜란드, 이태리, 프랑스, 소련, 스웨덴의 立法例 및 學說을 통하여 定期價船者의 法的 地位를 考察하였다.

第4章에서는 標準約款上 定期價船者와 船舶所有者에 대한 主要義務를 分析·檢討하고, 定期價船者의 對外的 責任의 근거가 되는 使用 및 補償約款과 不滿約款 그리고 責任 및 免責約款을 살펴봄으로써 定期價船契約의 法的 性質과 定期價船者의 法的 地位를 考察하였다.

第5章에서는 定期價船者의 第3者에 대한 責任에 중점을 두어 定期價船者가 運送契約의 履行중에 발생될 수 있는 具體的인 事例들을 통하여 定期價船者의 第3者에 대한 責任負擔 問題를 살펴보았다.

第6章은 要約 및 結論部分으로 먼저 연구의 결과를 要約하고 특히 定期價船者와 第3者에 대한 責任負擔 問題에 대하여 定期價船契約의 本質을 잘못 理解한대서 비롯된 既存學說의 문제점을 비판하였으며 나아가 定期價船者의 제3자에 대한 責任 問제는 定期價

定期價船者가 船舶을 定期價船하여 第3者的 貨物을 運送하는 運送人의 地位를 중심으로 한다.

第2章 定期傭船契約의 意義

傭船契約 (charter party, affrètement, Chartervertrag) 은 매우 多意的이고 포괄적인 概念인데, 一般的인 概念으로는 價船者가 船舶所有者로 부터 一定한 期間 또는 一航海, 또는 수차 航海하는 동안 船舶의 全部 또는 一部를 제공받아 使用하게 되는 海事契約 (maritime contract) 이다.¹⁾

여기서 價船契約 (charter party) 이라는 말은 divided document 의 意味를 지닌 라틴어의 “carta partita”라는 말에서 유래 된 것으로, 본래 이 charter party는 契約 자체의 名稱이 아니고 그 契約內容을 記入한 書面의 名稱이다. 즉 초기에는 한장의 羊皮紙에 契約의 條項을 기재하여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 文子 또는 形象 部分을 裁斷하여 契約當事者 雙方이 各 部分을 소지하고 後日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들을 이어 보아서 證據로 使用하였는데 carta 는 모두 擦印이 있는 證書, 그리고 partita는 分解한다는 意味이다.²⁾

傭船契約에 대한 概念은 大陸法系 나라와 英美法系 나라사이에 차이가 있다. 英美法上으로 價船契約은 charter party라는 용어로 통

1) Charles L. Trowbridge, The History,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arter concept, Tulane Law Review, volume. 49, 1975, p. 745.

2) Macnair & Moccatta, Mustill & Boyd, Scrutton on charter parties and Bills of Lading, 19th ed., London, 1984, p. 8.

船契約에 관한 標準約款의 정확한 分析등 契約 내용의 具體的인
解釋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일하여 使用하고 있는데, Ivamy 教授는 價船契約은 船荷證券과 같아 단순한 契約의 증거가 아니라 契約 그 自體라고 하고 다음의 3 가지 形態로 분류하고 있다.³⁾

① 特定航海를 위하여 船舶이 價船되는 航海價船契約 : (a voyage charter party)

② 一定期間동안 船舶이 價船되는 定期價船契約 : (a time charter party)

③ 裸價船契約 (船舶貿貸借契約) : (a charter party by demise)

즉, 英美法은 價船契約을 船舶貿貸借契約 (charter by demise) 과 船舶非貿貸借契約 (charter not by demise) 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獨逸, 日本의 경우는 海上物件運送契約을 個品運送契約과 價船契約으로 大別하고 있다 (우리나라 商法 第 780 條, 獨逸 商法 第 556 條, 日本 商法 第 749 條). 여기서 價船契約은 船舶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運送에 제공하여 物件을 運送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價船者 (charterer)는 이에 대하여 報酬로서 價船料 (運賃)를 支給할 것을 約束하는 契約⁴⁾ 인데 이는 航海價船契約을 가르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商法 第 780 條 1 項).

3) Payne & Ivamy, Carriage Goods by Sea, London, Butterworth, 1985, p. 8.

4) 孫珠瓊, 前掲書, 513 面; 田中誠二, 海商法詳論, 東京, 勤草書房, 1985, 245 面.

第 2 節 定期傭船契約의 概念

英美法上 價船契約은 船舶賃貸借契約 (charterparties by demie) 과 非賃貸借契約 (charterparties not by demie) 으로 나누고 있는데 定期傭船契約은 非賃貸借契約의 범주에 속한다.

여기서 定期傭船契約이란 船舶所有者가 자기가 雇傭한 船長 과 터 船員을 승선시킨 船舶에 貨物을 運送하도록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定期傭船者에게 서비스 (services) 를 제공하는 契約을 말한다.⁵⁾

한편, 大陸法上 定期傭船契約 (time charter-party, Zeitchartervertrag) 은 이를 廣義의 概念과 狹義의 概念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⁶⁾ 이와같이 구분할때 前者は 船舶所有者가 一定한期間 船舶을 相對方인 定期傭船者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一般을 意味하며 船舶利用에 관한 契約存續期間이 時間에 의하여 확정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¹⁹⁴⁵

이것에는 ① 期間傭船契約 ② 船舶賃貸借契約 ③ 狹義의 定期傭船契約 등이 포함된다.

狹義의 定期傭船契約은 一定한 典型約款을 포함하고 있는 契約에 의하여 他人 所有의, 船員이 몇번 船舶을 이용하기 위한 船舶所有者와 價船者 사이의 契約⁷⁾ 즉 船舶所有者가 자기의 船舶에 자기의 船員을 乘船시킨 채로 定期傭船者에게 一定한期間동안 使用

5) Scrutton, op.cit., pp. 53~55.

6) 田中誠二, 前揭書, 112面。

7) 林東喆, 定期傭船契約上 船舶所有者の 擔保義務에 關한 考察, 建國大學校 大學院 論文集 第 20 集, 1935, 195面.

用, 收益하도록 約定하고 船舶所有者는 報酬 (remuneration)로서 價船料 (charter hire)를 期間을 基準으로 하여 支給받는 契約이다.⁸⁾ 따라서 여기에서는 純運送契約의 價船契約과 純船舶賃貸借의 價船契約은 除外된다고 본다.⁹⁾

一般的으로 定期價船契約이라고 할때는 狹義의 것을 말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典型約款으로는 보통 다음의 4 가지를 들고 있다. 즉 總括的約款으로서 船舶賃貸借約款 (let and hire clause).¹⁰⁾

- ② 船舶을 價船者의 使用에 맡긴다는 處分約款 (disposal clause)
- ③ 船舶所有者가 雇傭한 船長 및 기타 船員을 價船者의 指揮命令에 따르도록 한다는 使用約款 (employment clause)과 이것에 附帶하여 價船者は 船員의 行爲에 不滿이 있을 때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船員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不滿約款 (misconduct clause) 및 ④ 船員의 給料, 船舶의 保險料, 修繕費 등은 船舶所有者가 부담하고, 燃料, 보일러¹¹⁾用水, 航海에 관한 諸稅, 導船料 등은 價船者의 부담으로 한다는 純價船約款 (net charter clause) 등이 그것이다.¹¹⁾

8) 裴炳泰, 註釋海商法, 서울, 韓國司法行政會, 1983, 137面.

9) 田中誠二, 前掲書, 112面.

10) "let"나 "hire" 등의 用語는 옛날의 船舶賃貸借契約의 書式 (old form of demise charter party)에서 쓰이던 것으로 定期價船契約에는 적합치 않은 용어이다.

Carver's Carriage by Sea, Vol. 1, 13 th ed., London, Stevens and Sons, 1982, pp. 460~461

11) 徐燦玗, 第3全訂 商法講義(下), 서울, 法文社, 1986, 517~518面.

第 3 節 定期傭船契約의 效用性

定期傭船契約이 이용되는 경우는 대개 다음의 3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本來의 定期傭船契約에서 볼 수 있는 形態로서 荷主(定期傭船者)가 運送依賴人(運送需要者)으로서 自己의 計算으로 自己의 貨物(또는 旅客)을 運送하고자 하는 경우(自己運送을 위한 定期傭船)이고, 둘째는 海運業者인 定期傭船者가 現在 引受한 大量荷物의 運送을 위하여 不足한 船腹을 보충하는 目的을 떠나서 實需要에 의거하지 않고, 장래의 船腹量不足이나 그로 인한 運賃, 傭船料의 上昇에 대한 投機的 利潤獲得의 目的, 또는 이의 逆으로 船舶所有者가 장래 예상되는 船腹의 과잉이나 이로 인한 運賃, 傭船料의 下落에 대처하며 傭船料가 높은 동안에 傭船契約을 맺어 不利益을 免하고자 試圖하는 경우(投機的 定期傭船契約)이며, 셋째는 運賃用役의 生產, 販賣者인 運送業者로서의 海運業者가 定期傭船者로서 調達한 船舶(運送用役의 生產, 販賣에 있어서의 固定的 設備)을 自己의 船隊에 編入시켜 自己의 計算으로 스스로 海運業을 營爲하는 경우(運送用役의 生產, 販賣者)이다.¹²⁾

이러한 定期傭船을 통하여 船舶所有者로서는 스스로 海上企業의 危險을 부담하지 않고도 資本利子的 傭船料 收入으로 企業利潤을 얻을 수 있고 傭船者인 海上運送人으로서는 巨大한 資本을 投下하여 船舶을 所有하지 아니하고도 船員과 船舶이라는 海上企業組

12) 窪田宏, 定期傭船契約法序說, 東京, 有斐閣, 1968, 12-14面.

職을 이용할 수 있다.¹³⁾

즉, 船舶所有者는 자기가 선임한 船長, 기타 船員을 船舶과 함께 保有하고 있다가 後日의 自己 經營時에 대비 할 수 있고 또 자기 사람을 통하여 어느 정도 船舶을 管理할 수 있으며, 定期傭船者는 巨額을 投資하여 企業組織을 擴大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 때의 船舶의 需要事情에 따라 伸縮性있게 經營할 수 있다.¹⁴⁾

또한 定期傭船者로서는 船長 기타 船員의 選任·解任·給與등의 번거로움을 船舶所有者에게 부담하게 하고 自己는 이러한 費用이나 危險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 契約은 특히 海運市況에 따라서 급박한 船舶의 需要가 필요하면 급히 船舶을 증가시키고 만일 需要가 감소하면 以前의 규모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利點이 크다고 볼 수 있다.¹⁵⁾ 따라서 定期傭船契約은 船舶賃貸借와 僑船契約의 短點을 補正하면서 法典外에서 생성·발전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船舶賃貸借보다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¹⁶⁾

13) 裴炳泰, 海運約款에 관한 法理論 研究, 延世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6, 159面.

14) 鄭熙喆·梁承圭, 商法學原論(下), 서울, 博英社, 1986, 155面.

15) 田中誠二, 前揭書, 117面.

16) 孫珠瓊, 前揭書, 495面.

第3章 定期傭船契約에 關한 立法例 및 學說과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

第1節 序 言

定期傭船契約에 關하여 英美,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商法에는 明文의 規定이 없다. 海運實務에서는 英國法에서 確立된 定期傭船契約法을 基本으로 하여 형성된 約款을 사용하고 있고, 但한 私法上의 契約自由의 原則이라는 大前提下에 當事者間의 合意에 막혀 왔으므로, 이에 關한 法的 性質이 정확히 確立되지 못하고 學說과 判例가 다양하게 對立되어 왔다.

그리한 이유는 海商法의 다른 분야와 달리 定期傭船契約은 일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 중엽에 최초로 발달한 契約形態이므로, 海商法上의 法律要件으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고 20세기 초까지는 각국이 이것을 당장 개별 自治에 막혀 왔기 때문이다.

그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많은 國家가 定期傭船에 관하여 成立法規정을 두게 되었는데 1924년 네덜란드 航行法, 1931년 日本 船員契約法, 1945년 영국 航行法, 1953년 美國의 船員航行法, 1966년 丹麥의 船員契約法, 1968년 法國의 船員航行法 등이 定期傭船에 關한 規定을 두고 있다.¹⁾

한편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을 파악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當事者사이의 문제보다 對外的 責任의 問題, 즉 第3者에 대

1) 齋田宏, 前掲書, 38-44面 및 191面이하

한 損害가 발생하였을 경우 定期傭船者와 船舶所有者와의 責任分配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이는 僑船者를 단순한 運送依賴人으로 보는가. 또는 獨立된 海上企業 主體性을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또한 僑船者의 對外的 責任을 左右하는 문제로서 理論的으로나 實際的으로나 매우 重要하다.²⁾

여기서는 定期傭船契約에 대한 立法例와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에 대한 學說을 살펴 봄으로써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를 紛明하고자 한다.

第2節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立法例와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

1. 概 說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오래된 立法例로는 北유럽의 海法인 1240年の 류벡(Lübeck)市海法 또는 1500年項의 비스비(Visby)海法 가운데 이에 관한 선구적인 規定이 있다는 研究도 있다.³⁾

그러나 成文法典 가운데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立法된 年代順에 따라 네덜란드 海商法, 이태리 航行法典, 프랑스의 僑船契約 및 海上運送에 관한 法律, 소련의 海商法 및 스웨덴 海商法을 중심으로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規定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林東喆, 前掲論文, 200面

3) 窪田宏, 前掲書, 25面이하

2. 네덜란드 ⁴⁾

네덜란드 商法典에는 第2編 海商에서의 權利와 義務의 發生 (right & obligations arising in shipping) 규정 (네商 309條 ~ 747條)에서 定期傭船에 관한 規定을 명시하고 있다 (네商 460條 ~ 465條).

定期傭船이란 특정한 期間동안 一方當事者인 선박제공자 (disponent)에게 상대방 当事者인 價船者가 一定한 期間을 기초로 계산한 運賃을 支給함으로써 자기의 目的에 따라 海上에서 航海에 使用하기 위하여 指定船舶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선박제공자가 引受한 契約이다 (네商 453條 1項). 그리고 선박제공자, 즉 船舶所有者는 價船船舶을 定期傭船者가 사용하도록 처분에 맡기고 또한 契約의 存續期間중 충분한 장비와 船員을 배치하며, 價船契約에서 정한 바의 使用에 적합하도록 船舶의 堪航能力을 적절한 상태로 維持하여야 한다 (네商 460條 1項). 즉 선박제공자는 제공된 船舶의 堪航能力維持義務를 지고 있다.

定期傭船者는 船舶運航과 관련하여 契約期間중에 자기의 目的을 위하여 海上에서 航海에 사용하는 (to use in navigation at sea for his own purposes) 船舶使用權을 가지며 (네商 453條 b項), 또한 第3者와 再定期傭船契約 또는 再航海傭船契約을 締結할 權限을 가진다 (네商 518條). 그리고 定期傭船者는 價船契約이 정

4) Netherland Shipowners Association, Netherlands Maritime Law (Commercial Code, Second Book), The Hague, 1960. 및 朴容燮,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 海洋韓國, 韓國海事問題研究所, 1988, 5, 89-90面 참조.

한 범위안에서 積荷의 受領, 運送 및 引渡와 관련하는 모든 事項 즉 商事的 事項에 관하여 船長에게 指示權을 가진다(네商 518 條 c). 따라서 定期傭船者는 海上運送과 관련한 商事的 事項에 관하여만 指示할 權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네덜란드 海商法에서 規定한 定期傭船者의 船舶使用權은 船舶質借人이 船舶을 占有·利用하는 것과는 달리 다만, 僑船船舶을 契約에서 規定한 目的을 為하여 海上 航海에 使用하는 것



2. 네덜란드⁴⁾

네덜란드 商法典에는 第2編 海商에서의 權利와 義務의 發生 (right & obligations arising in shipping) 규정 (네商 309條～747條)에서 定期傭船에 관한 規定을 명시하고 있다 (네商 460條～465條).

定期傭船이란 특정한 期間동안 一方當事者인 선박제공자 (disponent)에게 상대방 当事者인 傭船者가 一定한 期間을 기초로 계산한 運賃을 支給함으로써 자기의 目的에 따라 海上에서 航海에 使用하기 위하여 指定船舶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선박제공자 가 引受한 契約이다 (네商 453條 1項). 그리고 선박제공자, 즉 船舶所有者는 傭船船舶을 定期傭船者가 사용하도록 처분에 맡기고 또한 契約의 存續期間중 충분한 장비와 船員을 배치하며, 傭船契約에서 정한 바의 使用에 적합하도록 船舶의 堪航能力을 적절한 상태로 維持하여야 한다 (네商 460條 1項). 즉 선박제공자는 제공된 船舶의 堪航能力維持義務를 지고 있다.

定期傭船者는 船舶運航과 관련하여 契約期間중에 자기의 目的을 위하여 海上에서 航海에 사용하는 (to use in navigation at sea for his own purposes) 船舶使用權을 가지며 (네商 453條 b項), 또한 第3者와 再定期傭船契約 또는 再航海傭船契約을 締結할 權限을 가진다 (네商 518條). 그리고 定期傭船者는 傭船契約이 정

4) Netherland Shipowners Association, Netherlands Maritime Law (Commercial Code, Second Book), The Hague, 1960 및 朴容燮,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 海洋韓國, 韓國海事問題研究所, 1988, 5, 89-90面 참조.

한 범위안에서 積荷의 受領, 運送 및 引渡와 관련하는 모든 事項 즉 商事的 事項에 관하여 船長에게 指示權을 가진다(네商 518條 c). 따라서 定期傭船者는 海上運送과 관련한 商事的 事項에 관하여만 指示할 權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네덜란드 海商法에서 規定한 定期傭船者의 船舶使用權은 船舶賃借人이 船舶을 占有·利用하는 것과는 달리 다만, 傭船船舶을 契約에서 規定한 目的을 為하여 海上 航海에 使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덜란드 海商法上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는 船舶賃借人이 아닌 제한적 船舶運航者로 볼 수 있다.

3. 伊太利

이태리는 1942年 航行法典 (Codice della navigazion)⁵⁾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영리이용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定期傭船契約에 대하여는 별도의 獨立한 規定이 없고 第3部 항해설시와 責任의 第1章 船舶의 使用契約 (contract for the employment of ship) 중 第2節 傭船規定에서, 전체적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定期傭船契約의 定義는 傭船規定에서一般的인 概念으로 밝히고 있다. 즉 “傭船契約이란 船舶運航者가 約定된 運賃을 傭船者로부터 받기로 하고 特定船舶으로서 이미 確定된 1회이상의 航海 또는

5) Plino Manca, The Italian Code of Navigation, Milano Dott. A. Giuffre, 1958.

合意한 期間中에 契約上 또는 慣習上 정해진 조건을 바탕으로 한
傭船者の 指示에 따라서 航海를 成就할義務가 있는 契約이다.”
(伊航 384條)고 명기하여 船舶運航者에게 航海提供義務를 规定
하고 있다.

定期傭船契約에 있어서 船舶運航者は 出航하기 전까지 價船船舶
의 墓航能力이 있는 狀態로 維持해야 한다. 船舶運航者の 墓航能
力維持義務는 契約을 締結한 때에만 發생하는 것이 아니라, 全
契約期間 동안에, 어느 항에서든지 出航할 때까지 적절하게 維持
하는 것을 包含하며, 여기서는 船舶의 艤裝, 船員 및 菲요한 書
類의 비치를 包含한다(伊航 386條 前但). 따라서 船舶運航者は
可航能力(navigability)의 결함에서 損害가 發생할 경우에는 상
당히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損害
賠償責任을 져야 한다(伊航 386條 後但).

이에對하여 定期傭船者は 기관 및 裝置기계의 운전에 필요한
인력, 물, 운송수단 船舶船舶의 商事的 使用(commercial employment
of the vessel)에 소요되는 경우 공급할義務가 있다(伊
航 387條). 그러나 船舶運航者は 航海成就義務(伊航 384條)과
이미 價船船舶의 指示에 航海指示權을 가진데, 定期傭船者は 商
事의 用途를 目的으로 級長에 대하여 商事의 指示權과 船
舶證券을 發行請求權을 가진다(伊航 39條 前但).

又래, 航行法은 價船者가 船舶를 貸借하여 직접 航海에 사용
하는 契約은 船舶의 貸借契約(contract of hire of ship)으로서 價
船契約은 用도로 別定되고(伊航 376條 대지 383條), 이 契約

에서 船舶賃借人 (hirer) 은 契約期間동안 船舶을 占有移轉 발아서 運航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태리 航行法上 定期傭船者는 船舶運航者로서의 地位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航海傭船者와 같이 航海成就를 船舶運航者 (船舶所有者) 에게 요구하고, 이에 따라 船舶에 대한 商事的 指示權과 船荷證券發行請求權 (伊航 39條 前但) 을 가지게 된다.

4. 프랑스

프랑스商法은 원래 定期傭船에 關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1966年 法⁶⁾ “海上傭船契約 및 海上運送契約에 關한 法”(Loi n° 66-420 du 18 juin 1966 sur les contrats d'affrètement et de transport maritimes) 및 그 시행령인 “傭船 및 物件運送에 關한 데 그레” (Décret n° 1075 du 31 décembre 1966 sur d'affrètement, le transport des marchandises) 가 制定되어 종전의 學說·判例로 해결하던 것을 立法的으로 解決하였다.

여기서는 이 法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 新海上運送契約法의 改正의 중점은 商法典의 近代化, 프랑스 國內法의 1924年 船荷證券條約에의 接近, 海上旅客運送의 規定, 海上物件運送契約의 單一性의 回復, 傭船契約과 物件運送契約과

6) 이 1966年的 프랑스 新法은 1924년 船荷證券統一條約을 수용하여 國內立法化한 1936年 海上物件運送法을 프랑스商法改正作業의一部로 改正한 것으로 1924년 선하증권통일조약상의 船主의 塾航能力擔保에 대한 船主責任의 法理를 모든 傭船契約에 導入한 것이 특색이다.
夏炳泰, 前揭論文, 164面

의 구별, 物件運送人과 荷役業者와의 쌍방에 單一制度의 適用 등이 다.⁷⁾ 또한 이 法은 第 1 編 價船, 第 2 編 物件運送, 第 3 編 旅客運送, 그리고 第 4 編 荷役業으로 構成됨으로써 적어도 形式上으로는 價船契約이 物件運送契約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第 1 編의 價船은 總則, 航海傭船, 定期傭船, 裸傭船(船舶賃貸借契約) 및 再傭船의 다섯개의 章으로構成되어 있는데, 이 것은 프랑스法이 英美法과 같이 넓은 의미로 價船契約 概念에 航海傭船, 定期傭船, 裸傭船(船舶賃貸借)을 包含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第 1 編의 第 1 章 總則 第 1 條는 價船契約의 要件 및 效果는 契約當事者が 定하는 바에 따르고 이 法 및 法施行令의 規定은 當事者の 合意가 없을 때에 適用된다고 規定함으로서, 이 法令이 補充的인 效力を 갖는 것임을 밝하고 있다.

定期傭船契約에 관하여 規定을 보면 定期傭船契約은 繼裝付 船舶을 一定期間동안 價船者の 使用에 委託하는 契約(法 7 條)이라 정의하고 있고 船舶所有者は 運送物에 對한 損害가 施行令에서 定하는 船舶所有자의 義務(施行令 第 19 條의 堪航能力注意義務)와 不履行으로 因하여 生겼을 때에는 이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만 船長과 사용자의 航海上의 過失에 대하여는 免責된다(法 8 條)고 規定하고 있다.

한편 價船자는 商業上의 經營⁸⁾에 의거하여 船舶에 생긴 損害

7) 滅常夫, フランス 新海上運送契約法(一), 法學協會雜誌, 第 84 卷, 64 頁

8) 1924 年 船荷證券統一條約 第 2 條, 第 4 條, 第 6 條 참조

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法 9 條)

또한 船舶의 管理를 航海上의 管理와 商業上의 管理로 區分하여 각각 船舶所有者와 定期傭船者에게 責任을 分擔, 귀속시키고 (同法 「데그레」 20 條, 21 條), 船長은 僑船契約書에 定한 범위내에서 船舶의 商業上의 管理에 관한 一切의 事項에 관하여는 僑船者의 指示에 따라야 한다 (22 條)는 새로운 입장을 취하여 定期傭船契約에서 船舶所有者와 僑船者의 關係를 明白히 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法上 定期傭船者는 英美와 같이, 船舶賃借人の地位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運送의 주체로서 船舶의 商業上 관리에 대하여만 責任을 지게 된다.

5. 蘇聯

1929年의 蘇聯海商法 (Merchant shipping code of the USSR 1929)에서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規定은 하나의 節로 海上運送의 章 (chapter) 가운데 規定되어 있었으나 1968年的 海商法⁹⁾ (Merchant shipping code of the USSR 1968)은 第8章에서 「海上物件運送契約」, 第9章에서 「海上旅客運送契約」에 關하여 規定하고

9) William E. Bulter & John B. Quigley, Jr., The Merchant shipping code of USSR(1968) The John Hopkins press, Baltimore & London, 1970, p. 20. 이 冊은 소련 현행 海商法의 概要와 條文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문 헌으로서 소련海商法에 關한 解說은, 林東喆, 1968年 소련海商法典의 概要와 特色, 韓國海法會誌, Vol. 9, No 1, 1987, 40-65面참조. 소련해상법은 150章 252個條로 구성되었던 1929年 海商法典을 改正增補한 法律로서, 19個章 309條로 이루어져 있고, 1968年 9月 17日에 제정되어 同年 10月 1日에 び奏되었다.

第 10 章에서 「定期傭船契約」에 관하여 規定함으로써 定期傭船契約 을 運送에서 分離시켰다.

이 法의 適用對象은 第 1 條에서 다음과 같이 明記하고 있다.

「蘇聯海商法典은 海商 (merchant shipping)으로 부터 생기는 여러 관계를 규율한다. 이 法典에서 海商이라 함은, 物件, 旅客, 手荷物 및 電便物의 運送을 위한, 그리고 漁業 그 밖의 다른 海事產業, 有用한 鐵物의 採取, 引引의 實行, 碎冰 및 海難救助作業을 위한, 더 울리 다른 經濟的, 科學的 그리고 休養 (recreational) 目的을 위한 船舶의 利用과 관련되는 活動을 말한다.」 따라서 아름바 船行為 기마 営利의 目的등이 海商의 要素가 될 수 없음을 물론이고 船舶의 其의 모든 活動이 이 法의 適用對象이 된다.

나만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이 法典의 規定은 海軍旗를 캐 얹하고 航行하는 船舶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12 條 1 項)

定期傭船契約에 關하여는 第 178 條에서 第 186 條에 이르기까지 9個의 條文을 두고 있다.

規定內容을 보면, 먼저 定期傭船契約에 의하여 船舶所有者는 船舶借用人 (貸賃船) 價船者 (賃借人)에 대하여 物件, 旅客, 旅客의 連送이나 이 法 第 9 條 (船舶의 運義에 關한 規定)에서 정하는 다른 目的을 위하여 一定한 期間 船舶를 利用시킬義務가 있다 (178 條)고 하여 定期傭船契約의 定義를 規定하고 있다. 此外 蘇聯海商法上의 定期傭船契約의 性質은 貨貸借와 勞務가 混合된 混合契約이라고 보다는 需供性이 강한 契約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同法 第 183 條에서 「…傭船者는 만약 船員이 船舶所有者에 의하여 選任 되었으면 僑船된 船舶의 救助, 損傷 또는 滅失로 인한 損害 또는 그 船員의 過失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規定하여 船舶賃貸借契約에서와 같이 定期傭船者에게 船員의 選任權의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¹⁰⁾

또한 定期傭船契約에서 當事者の 法律關係는 兩者的 合意에 의하여 따로 定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 適用된다(179 條)고 規定하여 當事者 合意 優先의 原則을 분명히 하고 있다.

第 180 條에서 第 182 條까지는 僑船者の 轉賃借(sublease)・契約目的을 위하여 이용 적합한 船舶을 船舶所有者가 僑船者에게 제공할 의무와 船舶所有者的 船舶維持義務 및 定期傭船契約書의 記載事項등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定期傭船契約 關係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僑船者 및 船長의 地位등에 관하여 第 183 條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僑船者は 定期傭船契約의 條件에 따라서 船舶이 그의 使用을 為하여 引渡된 때로부터 그 船舶을 이용하며 船長이 서명한 船荷證券에서 생긴 의무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船長은 船舶의 이용에 관한 僑

10) 한편 定期傭船은 원래 船舶所有者가 스스로 選任하고 보수를 支給하는 船員을 통하여 占有와支配(possession and control)를 계속하는 선박소유자 所有의 船舶을 僑船者가 일정한 期間 이용하는 契約關係이므로 위 第 183 條는 그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僑船者の 地位 및 船長과의 關係를 規定한 것이라고 한다.(林東喆, 1968年 소련 海商法典의 概要와 特色, 韓國海法會誌, Vol. 9, No 1, 1987, 56面)

船者와 船員의 차지에 따라야 한다. 다만 航行 (navigation), 船內秩序 및
船員의 配乘에 관한 차지에 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다. 傳船者는
船員이 船舶所有者에 위하여 選任될 경우에는 傳船된 船舶의 救
助, 損傷 또는 滅失로 인한 損害 또는 그 船舶의 船員의 過失
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蘇聯當事 計期儲船者는 美美서 회社 같이 완전히 船舶借人의 執行부원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定期儲船者에게 船長의 船長의 任命權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고 船荷證券의 발행에 대해서 本人이 證可자인 때도이다. 그러나 船舶의 航行과 船員의 工作에 관한 자세한 대화면 船長이 定期儲船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船員으로 보아 船荷證券은 船舶借人의 地位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6 - 2003-01-11

本年號 船商的名 定期傭船契約에 양대에서 船舶所有者名 船上運送
人(crew)의 名 本主 運送·卸載 船舶期間登場 定期傭船表外 例
案에 出賣船에 派遣하는 船商은 船上登場 船主는 船上登場 船上運送
人(crew)은 船上登場 船上卸載 船上登場 船上登場 船上登場 船上登場

(ii) The Gothenburg Maritime Law Association, The Swedish Maritime Code, Stockholm, 1982, 第 朴昌燮, 前揭論文, 90-91 頁, 註 2.

의 운항에 必要한 연료 및 보일러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스해 138 條 後但)

여기서의 航海 (voyage)는 定期傭船者가 商事的 운송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定期傭船者는 航海成就에 必要한 비용 (expenses for the performance)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斯海 140 條).

定期傭船契約에 있어서 第3者에 대한 責任은 定期傭船者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海上運送人인 船舶所有者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善意의 第3者를 보호하고 있다. 즉 船舶所有者は 선장, 해원 또는 도선사가 자기의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his service) 발생한 過失 또는 慢怠 (fault or neglect)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負擔하도록 하여 船舶所有者에게 對外的 責任을 集中시키고 있다. (스해 233 條).

定期傭船契約上 船舶所有者가 선장과 승무원을 고용하도록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스해 138 條) 定期傭船者는 선장 및 승무원의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第3者에게 가한 損害에 관하여는 損害賠償의 責任이 없다.

스웨덴 海商法은 定期傭船契約을 船舶賃貸借契約의 法的 性質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海上運送契約의 하나로 보고 있다. 즉, 僑船料를 船舶의 使用에 대한 使用料로 보지 않고, 期間을 단위로 계산한 운임으로 보고 (斯海 71 條), 선박제공자를 海上運送人으로 明示하고 있다 (斯海 137 條). 이것은 스웨덴 해상법이

定期傭船者의 지위를 船舶運航者로 보지 않고, 선박제공자인 海上運送人에 대하여 海上物件運送을 의뢰한 荷主의 地位를 가진 契約當事者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스웨덴 해상법은 定期傭船契約을 海上物件運送契約으로 인정하여 第5章 海上物件運送에서 航海傭船契約과 定期傭船契約으로 나누어立法하였다.

第3節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學說과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成文法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의 해석을 둘러싼 學說이 각 나라마다 발전하여 왔다. 定期傭船契約에 대한 法的 性質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은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의 올바른 인식에 必要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요구된다. 다음에서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에 관한 國內와 國外의 學說을 통하여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國內의 學說

우리 商法은 定期傭船契約에 관하여 明文의 規定이 없으므로 이의 解釈을 둘러싼 學說의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주로 日本의 影響을 받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國內의 學說을 살펴보면 국내의 나수설은 定期傭船契約을 船舶質貸借와 労務供給契約의 混合된 混合契約이라고 보고 있다.¹²⁾ 이 說은 定期

¹²⁾ 余慶基, 前揭書, 518-519面; 雷基元, 新版商法學新論(上), 博英社, 1984, 548面。

孫珠瓊, 前揭書, 497面; 裴炳泰, 前揭書, 161面

傭船契約이 一定期間 價船者에게 船舶의 사용을 허용하는 점에서 보면 貨貸借에 근사하고, 그期間中에 船長과 海員의 勞務의 공급을 약속하는 점에서 특유한 성질을 지닌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¹³⁾

이說은 독일의 法院이 1901年の 判決¹⁴⁾에서 취한 學說이며 日本의 判例¹⁵⁾가 취하였던 입장이다. 그러나 이說에서 定期傭船者의 海上企業主體性을 인정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船舶貨貸借의 관념에 비중을 두고 定期傭船契約 自體의 本質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¹⁶⁾

이 밖에 통상의 價船契約과는 달리 船舶貨貸借契約에 근접하면서 勞務供給契約을 수반하는 特殊契約이라고 보는 特殊契約說¹⁷⁾이 있으나 이說도 결국은 定期傭船契約을 船舶貨貸借契約과 같이 취급하고자 하며 다수설과 결과는 같아진다.¹⁸⁾ 混合契約說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3) 徐嫩珏, 前揭書, 519面

14) 독일에서는 法院이 1901年の 이른바 Trio호 사건에서의 판결이후 定期傭船契約은 船舶貨貸借契約과 勞務供給契約과의 결합이라는 진해(混合契約說)를 취하였다. 林東喆, 定期傭船契約과 船舶所有者, 價船者의 對外的 責任에 관하여, 韓國海法會誌, Vol.8, № 1, 1986, 116面

15) 大審院, 昭和三年六月八日 第一民事部判決. 別冊, シリスト, 海事判例百選(增補版), 有斐閣, № 42, oct. 1973, 44-45面. 判決要旨: 이른바 定期傭船契約의 성질은 船舶貨貸借와 勞務供給契約과의 混合契約이다.

16) 林東喆, 前揭論文, 119面; 海事判例百選, 45面

17) 鄭熙喆, 梁承圭, 前揭書, 156面

18) 裴炳泰, 前揭書, 116面

첫째, 船舶所有者는 傭船 船舶의 占有를 定期傭船者에게 이전하지 않고서 그 船舶을 賃借도록 하며, 동시에 船舶의 자유사용을 定期傭船者에게 이 전시켜서 용익하도록 하는데 대한 法理論上의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둘째, 契約期間동안에 定期傭船者가 傭船 船舶을 자유사용도록 하기 위하여 船舶所有者가 船長 기타 船員의 勞務供給을 약속한 것이나 이 말은 船舶所有者가 船長 기타 船員의 동의를 받아서 勞務請求權을 定期傭船者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民法 657條 1項). 그러나 이 문제도 定期傭船者가 실제로 傭船 船舶의 占有를 이전받지 않고서 船舶所有者가 풍급받을 船長 기타 船員의 勞務를 이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뚜렷한 法理上의 說明이 없다.

한편 定期傭船의 내용을 分析하여 定期傭船者가 個人의 貨物을 인수하여 海上運送人の 地位 즉 企業의 主體에 서계되는 경우와 자기 貨物의 운송에 船舶을 사용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契約의 실체가 物件의 運送에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전자를 「企業型 定期傭船」이라고 하고 후자를 「運送型 定期傭船」이라고 하여 각각의 法的 特성을 날리하여 「運送型 定期傭船」은 「都給契約」이거나 「企業型 定期傭船」은 「企業의 單位組織의 貸賃借」라고 하는 說法 있다.¹⁹⁾ 但學說은 日本의 類型說과 비슷하다. 이 說의 「特點」은 첫째 定期傭船契約의 様態를 海上運送에 한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萬商法 規定은 海上運送에 사용되는 商船을 보는 것이다.

19) 金炳泰, 前揭論文, 158面 误 166面

뿐만 아니라 그 種類에 관계없이 営利航海에 사용하는 船舶이면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商法 740條). 둘째 定期傭船契約에서 船員이 승선한 船舶을 海上企業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를 貨貸借型으로 보았을 경우, 民法上의 典型契約인 貨貸借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의 의문이 있다.

한편 우리 商法의 規定을 살펴보면 損害賠償責任의 主體가 되는 運送人으로서 船舶所有者만을 規定하고 있다(商法 766條). 따라서 그 밖의 경우, 즉 定期傭船者의 경우에는 商法에 아무런 規定이 없다. 그러므로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標準約款의 내용과 定期傭船契約에 관한 學說에 따라서 정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通說인 混合契約說이나 그 밖의 特殊契約說, 企業型 定期傭船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定期傭船者를 商法上의 船舶貨借人(商法 766條)에 準한다고 보는데에는 다툼이 없다. 즉 우리 商法上 明文의 規定은 없지만 契約의 성질上 船舶貨借性을 인정하여 商法 第 766條(船舶貨借와 第3者에 대한 法律關係)를 定期傭船者에게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英美法의 입장이나 海運實務界의 견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2. 外國의 學說

(1) 英 美

英國과 美國은 定期傭船에 관한 成文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定期傭船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標準約款과 判例로 해결하고 있다.

英美法에 있어서의 傭船契約 (charter parties)의 概念은 ① 船舶賃貸借 (charter by demise), ② 定期傭船 (time charter), ③ 航海傭船 (voyage charter)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²⁰⁾

英美法에서는 船舶의 所有와 支配 (possession and control over the ship)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船舶賃貸借와 定期傭船 및 航海傭船을 구분하고 있다. 즉 이 所有의 이전유무는 船長 기타 船員에 대한 任免權과 指揮命令權이 船舶所有者에게 있느냐 價船者에 있는냐에 따라 결정되고 또 船長은 누구를 위하여 船舶上의 所有者 (本船主)或有代理人이거나 따라 결정되어 이 原則를 創例法으로 적용되어 있다.²¹⁾ 따라서 영미권 定期傭船契約上의 定期傭船是在 船舶賃借, 또는 말인 航船의 船舶에 대한 所有 (POSSESSION), 即 所有 (占有)의 차이로 船舶所有者 (자기)와 그동안 船長이 차지하는 (占有)의 차이로 船舶上의 實際 (대한 擁有)를 명시하는 원칙이다.

20) See for ex., C. C. pp. 51~52; Ivamy, op. cit., p. 9; Carver, op. cit., pp. 516~518.

21) 영미권 航海傭船契約이나 定期傭船契約에 있어서는 價船者는 船舶의 貨物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지게 되고 船舶에 대한 所有權은 船舶所有者에게 이전되기 쉽지는 것이다. 따라서 船舶所有者は 차지해온 고수동 船長 및 기타 船員을 통하여 이러한 權利를 행사한다. Ivamy, Ibid., p. 2.

하게 된다.²²⁾ 그러므로 英美法上 定期傭船契約은 기간을 기준으로 船舶利用을 결정하고 船舶의 占有는 계속 船舶所有者가 保有하는 契약이다.²³⁾ 즉 定期傭船者는 船舶所有者와의 内부관계를 價船契約²⁴⁾에 따르며 第3者에 대한 관계는 英美法上 定期傭船契約이 일종의 運送契약이므로 定期傭船者の 海上企業 主體性은 부인되고 船舶所有者가 海上企業의 主體로서 對外的 責任을 진다.²⁵⁾

(2) 獨逸

독일법은 定期傭船에 관한 明文의 規定을 두고 있지 않기 때



2. 外國의 學說

(1) 英 美

英國과 美國은 定期傭船에 관한 成文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定期傭船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標準約款과 判例로 해결하고 있다.

英美法에 있어 그의 價船契約 (charter parties)의 概念은 ① 船舶賃貸借 (charter by demise), ② 定期傭船 (time charter), ③ 航海傭船 (voyage charter)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²⁰⁾

英美法에서는 船舶의 占有와 支配 (possession and control over the ship)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船舶賃貸借와 定期傭船 및 航海傭船을 구분하고 있다. 즉 이 占有의 이전우무는 船長 기타 船員에 대하 項免權과 指揮命令權이 船舶所有者에게 있느냐 價船者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또 船長은 누구를 위하여 船舶上의 占有를 하느냐에 占有代理人이나에 따라 결정되어 이 原則를 動機적으로 등장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定期傭船契約上의 價船者는 船舶賃借者나 또는 달리 價船된 船舶의 占有 (possession)을 가진 자나 船舶所有者나 차기자 그동안 船長이 차지한 船舶의 占有權이 航海上의 管理에 대한 權利를 행사한다.

20) Seein, op. cit., pp. 51 ~ 52; Ivamy, op. cit., n. o.; Carver, op. cit., pp. 210 ~ 212.

21) 例) 本邦 航海傭船契約이나 定期傭船契約에 있어서는 價船者は 船舶에 물건이나 대한 소유권만을 가지게 되고 船舶에 대한 占有權은 價船者에게 이전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船舶所有者는 차기에게 船舶에 대한 船長 및 차대 船政을 통하여 이러한 權利를 행사한다. (Ivamy, ibid., p. 9.)

하게 된다.²²⁾ 그러므로 英美法上 定期傭船契約은 기간을 기준으로 船舶利用을 결정하고 船舶의 占有는 계속 船舶所有者가 保有하는 契약이다.²³⁾ 즉 定期傭船者는 船舶所有者와의 内부관계를 僕船契約²⁴⁾에 따르며 第3者에 대한 관계는 英美法上 定期傭船契약이 일종의 運送契약이므로 定期傭船者の 海上企業 主體性은 부인되고 船舶所有者가 海上企業의 主體로서 對外的 責任을 진다.²⁵⁾

(2) 獨逸

독일법은 定期傭船에 관한 明文의 規定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法的 性質에 대하여는 學說과 判例로 해결하고 있다. 判例는 오랫동안 定期傭船契約을 貨貸借契約에 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都給契約에 속한다고 하다가 1901年 Trio 號 事件에서 定期傭船契約을 船舶貨貸借契約과 勞務供給契約이 결합한 混合契약이라고 판결하고 그런 취지를 반복하여 발전시켜 왔다. 그렇지만 독일판례는 定期傭船契約의 당사자간에는 船舶貨貸借의 存在를 인정하지만 第3者와의 외부관계에 대해서는 定期傭船者를 獨逸商法 第510條에서 規定하는 他船繕裝者 (Austrüster)로는 보지

22) Ivamy, Ibid., p.10; Carver, op.cit., p.450.

23) Carver, Ibid., p.460.

24) 실무상으로는 定期傭船에 관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NYPE Form이나 Baltim Form등을 이용한다. NYPE Form 및 Baltim Form에 대하여는 第4章의 각주 1)을 참조.

25) Gilmore & Black, Jr., The Law of Admiralty,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1979, p. 194. 日本의 一部學說(運送契約說)과 해운실무계가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萩原正彦, 前掲書, 337面, 이러한 견해는 第3者와의 관계에서 당사자의 규명에 명확성과 확실성을 주는 장점이 있다.

아니하였다.²⁶⁾ 이러한 태도는 독일의 學說에서 定期傭船者를 船舶
賃借人으로 인정하는 것과 반대되는 견해였다. 즉 내부관계에서는
定期傭船契約의 賃借性을 인정하였으나 외부관계에서는 船員의 過
失에 대한 責任 (독일상법 485 條) 만을 定期傭船者에게 인정하였
다. 독일법원의 이러한 견해는 1956年 11月 26日 및 1957年 12
月 12日 大法院 判決에서 도이자이트 (Deutzzeit) 定期傭船契約은
船舶賃貸借가 아니라고 判示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²⁷⁾ 즉 定期
傭船者의 法的 地位는 독일 商法 第 510 條 (他船儀裝者 : Austrü-
ster) 를 적용하지 않고 第 485 條 (船員의 過失에 대한 責任 :
Haftung für Verschulden der Schiffsbesatzung) 를 적용한다는 견해를
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견해는 불타임 또는 독일의 定期傭
船 보통거래 약관인 도이자이트로써 합의한 定期傭船契約은 그
내용에는 전혀 賃貸借의 요소를 包含하고 있지 않은 定期傭船契
約 즉 非賃借型 定期傭船契約이기 때문에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
位는 他船儀裝者가 아님이 분명하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따
라서 第 3 者에 대한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責任의 主體는 定期傭
船者가 아니라 船舶所有者 또는 船舶賃借人인 것이다.
위의 判例의 입장과는 달리 定期傭船契約이 僑船者에게 航海에
관한 船長의 務務에 관하여 完全한 처분권을 부여하고 船長으로

26) BGHZ 26, 152 (Hans Jürgen Abraham, Das Seerecht,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69, s. 73).

27) Schaps -Abraham, Das See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mmentar und Materialsammlung, vierte, völlig neu bearbeitete Auflage, Walter de Gruyter, Berlin, 1978, S. 323ff.

하여 금 價船者의 一般的 命令權에 복종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特別한 勞務供給 (qualifizierte Dienstverschaffung)이 있다고 하여 이 경우에는 價船者는 勞務供給을 받는 것에 의하여 命令者로 되고 船長을 占有代理人으로 하여 船舶의 직접 檢유를 가지는 價船契約으로서 貨貸借契約과 같은 外觀을 가진다고 하여 독일 상법 第 510 條를 유추적용한다는 學說이 있다.²⁸⁾

근래에는 定期價船者가 대외관계에 있어서 自己의 이름으로 营利航海를 하고 특히 자기 固有의 社旗를 게양하는 등 外觀上 船舶裝裝者로 보이는 경우에는 表示信賴의 原則 (Gebot der Erklärungstreue)에 따라 商法 第 510 條를 적용 내지 유추 적용하여 第 3 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見解가 유력하다.²⁹⁾

(3)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는 1966年 海上價船契約 및 海上物件運送契約에 관한 法 (Loi n° 66-420 du 18 juin 1968 sur les contrats d'affrètement et de transport maritimes)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定期

28) 田中誠二, 前掲書, 122-123面

한편 Wünstendörfer (混合契約說)나 Pappenheim (船舶使用說)처럼 定期價船者에게 外見上 海上運送人과 같이 보이는 법적 확신을 주어서 외부관계에 있어서 善意의 제3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강조하는 학자도 있다.

Wünstendörfer, H., Neuzeitliches Seehandelsrecht, 12, Aufl., Tübingen, verlag, J.C.B. Mohr, 1950, s. 118 및 Pappenheim M., Handbuch des Seerechts, Bd. III, München, 1918, S. 99 참조

29) 田中誠二, 前掲書, 122-124面

Schaps - Abraham, a.a.o, s. 323.

定期傭船者의 法的地位에 관한 研究

傭船契約의 성질에 관하여 學說과 判例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同 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래 定期傭船契約을 船舶의 貨貸借와 勞務의 公급과의 混合이라고 보는 說이 유력하였으나 근래에는 海上運送에서 船舶이 特定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어서 이것을 都給契約이라고 보기로 이르렀다.³⁰⁾

定期傭船에 있어서는 定期傭船者를 船舶艦裝者 (armateur) 라 하면서 定期傭船契約을 海上運送契約이라고 하고 海上運送에 관한 規定의 적용을 인정하고자 하였다.³¹⁾

定期傭船者は 第3者에 대하여 船員의 過失行爲에 따른 無過失責任을 지지 아니하지만 다만 船長 기타 船員의 選任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船員에 대한 指揮命令權을 갖는 때에는 民法上의 貸借人の 責任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여 왔다. 그 바탕에 船長이 航海를 위하여 하는 契約上の 義務는 定期傭船者로부터는 基本이 原則이나 船長이 船舶所有者的 代理人이라고 보기로 부담하는 것이 경우에는 이 것을 船舶所有者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善意인 경우에는 이것을 船舶所有者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유력하였다.³²⁾

그리나 1907年 法 律 指令 12月 31日에 同法의 施行일인 「海上運送契約 關 附帶運送契約에 관한 대포령 (decret)」³³⁾가 제정되었는데 이는 立法論의 으로 調整하였다. 定期傭船에 관하여 同法 第8條은 船舶所有者は 連送物의 損害가 施行令에서 정하는 船

30) 麥炳泰, 前掲論文, 163面

31) 上掲論文

32) 田中誠二, 前掲書, 119-120面

船所有者의 義務(施行令 第19條의 堪航能力維持義務)의 不履行으로 인하여 생겼음이 입증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만 船長 기타 使用人의 航海上의 過失에 대하여는 免責된다 고 規定하고 第9條는 僱船者는 商業上의 經營에 의거하여 船舶에 생긴 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同法 第9條와 施行令 第19條이 하는 定期僱船者의 對外的 責任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4) 日 本³³⁾

日本도 우리나라나 독일과 같이 定期僱船에 관한 明文의 規定이 없다. 따라서 學說과 判例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를 간단히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 純運送契約說

定期僱船契約은 일종의 運送契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航海僱船契約과 동일시하여 海上企業의 主體는 어디까지나 船舶所有者이며 僱船者는 船舶을 빌려서 그것에 의한 運送을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運送依賴人の 地位에 불과하다는 學說이다.³⁴⁾ 그 근거로는 船長 기타 船員의 選任, 감독권은 여전히 船舶所有者에게 남아 있으므로 定期僱船者는 船舶賃借人과는 달리 船舶의 사용·수익권은 가지지만 第3者에 대한 관계에서 海上企業

33) 日本에서의 定期僱船契約의 法的 性質에 관한 학설의 개요에 관하여는, 川又良也, 定期僱船の性質, シエリスト 増刊, 商法の争點(第二版) 法律學の爭點, シリーズ, 4, 有斐閣, 1983, 10.30, 270-271面 참조

34) 이 說은 영미법이 취하는 입장이며, 日本에서도 一部學說과 運送實務界的 지지를 받고 있다. 萩原正彦, 前揭書, 337面이하; 戸田修三, 海商法, 東京, 文眞堂, 1979, 104面이하

그로서의 地位는 船舶所有者에게 있다는 것이다.³⁵⁾

따라서 定期傭船者는 第 3 著에 대하여 日本 商法 第 704 條(船舶
賃借人의 地位에 관한 規定)의 적용이 없다고 한다.³⁶⁾

(2) 混合契約說

이 說은 1928年 日本의 大審院³⁷⁾ 이에 따른 이후 日本
判例가 계속하여 이를蹈襲하고 學界的 대수설이 되었던 것으로
定期傭船契約은 船舶賃貸借와 務務供給契約과의 混合契約이라고 하
는 說이다.³⁸⁾

이 說은 定期傭船契約에 賃貸借性을 인정하면서 定期傭船者에게
당연히 日本 商法 第 704 條(船舶賃借에 관한 規定)의 規定의
적용을 인정하게 되고 따라서 定期傭船者는 船舶所有者와 동일한
權利·義務를 가진다고 해석한다.³⁹⁾

(3) 變態的 運送契約說

純運送契約說과 混合契約說의 양극 단을 배제하고 折衷的 態度를 나
타내는 그로서 定期傭船契約은 주수한 運送契約은 아니지만 일종
의 變態的 運送契約이라 하여 定期傭船者에게 日本 商法 第 704
條의 적용을 유추적용을 부임하는 說이다.⁴⁰⁾

35) 戸田修三, 前揭書, 126面

36) 田中誠二, 前揭書, 126面

37) 訂(36)補足

38) 鎌田宏, 前揭書, 197面 이하, 海事判例百選, 44-45面

39) 田中誠二, 前揭書, 127面

40) 田中誠二, 前揭書, 127面

石井照久, 海商法·保險法, 東京, 動草書房, 1976, 62面

④ 禁反言說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은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못되며 이 것을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說이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船長의 任免權이 船舶所有者에게 있는가 定期傭船者에게 있는가에 의하여 그 契約이 運送契約으로 되기도 하고 船舶賃貸借契約으로 되기도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第3者가 定期傭船者를 船舶所有者로 믿고 行爲한 때에는 禁反言原則의 적용에 의하여 定期傭船者は 第3者에 대하여 船舶所有者로서의 責任을 부담한다는 說이다.⁴¹⁾ 다만 不法行爲責任의 귀속에 관하여는 그 契約의 內部關係



따로서의 地位는 船舶所有者에게 있다는 것이다.³⁵⁾

따라서 定期傭船者は 第3者에 대하여 日本 商法 第704條(船舶賃借人の地位에 관한規定)의 적용이 없다고 한다.³⁶⁾

(2) 混合契約說

이 說은 1928年 日本의 大審院³⁷⁾이 이에 따른 이후 日本判例가 계속하여 이를 답습하고 學界의 다수설이 되었던 것으로 定期傭船契約은 船舶賃貸借와 勞務供給契約과의 混合契約이라고 하는 說이다.³⁸⁾

이 說은 定期傭船契約에 貨貸借性을 인정하므로 定期傭船者에게 당연히 日本 商法 第704條(船舶賃借에 관한規定)의規定의 적용을 인정하게 되고 따라서 定期傭船者は 船舶所有者와 동일한 權利·義務를 가진다고 해석한다.³⁹⁾

(3) 變態的 運送契約說

純運送契約說과 混合契約說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折衷的 態度를 나타내는 論로서 定期傭船契約은 순수한 運送契約은 아니지만 일종의 變態的 運送契約이며 하여 定期傭船者에게 日本 商法 第704條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인하는 說이다.⁴⁰⁾

35) 織田修三, 前掲書, 126面

36) 田中誠二, 前掲書, 126面

37) 韻文(23)書記,

38) 織田宏, 前掲書, 197面 이하 · 海事判例百選, 44-45面

39) 田中誠二, 前掲書, 127面

40) 田中誠二, 前掲書, 127面

石井照久, 海商法·保險法, 東京, 勤草書房, 1976, 62面

④ 禁反言說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은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못되며 이 것을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說이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船長의 任免權이 船舶所有者에게 있는가 定期傭船者에게 있는가에 의하여 그 契約이 運送契約으로 되기도 하고 船舶賃貸借契約으로 되기도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第3者가 定期傭船者를 船舶所有者로 믿고 行爲한 때에는 禁反言原則의 적용에 의하여 定期傭船者は 第3者에 대하여 船舶所有者로서의 責任을 부담한다는 說이다.⁴¹⁾ 다만 不法行爲責任의 귀속에 관하여는 그 契約이 內部關係의 경우는 船舶所有者が 부담하고 賃貸借의 契約의 경우는 定期傭船者が 부담한다고 한다.⁴²⁾

⑤ 類型說

定期傭船契約의 性質은 一般契約의 해석과 같이 당사자가 추구하는 目的까지 검토한 후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積荷」指向型의 定期傭船契約과 「船舶」指向型의 定期傭船契約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運送契約으로, 후자는 船舶 및 船員에 대한支配機能의 讓渡를 수반한다고 하여 船舶賃貸借와 船員의 務務供給을 수반하는 混合契約이라고 하는 說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定期傭船者は 船舶賃借人과 같은 地位를 가지게 된다.⁴³⁾

⑥ 海技·商事區別說

i) 說은 프랑스 商法에 따라서 船舶利用의 내용을 海技事項과

41) 小町谷操三, 海商法 要義 中卷 1, 東京, 岩波書店, 1952, 36面이 하.

42) 田中誠二, 前掲書, 127面

43) 窪田宏, 前掲書, 183-184面

商事事項으로 구분하여 定期傭船契約은 海技事項을 船舶所有者的 부
당부분으로 하고 商事事項만을 定期傭船者의 管理로 하는 점에 있
어서 船舶賃貸借契約과 다르며 따라서 定期傭船者は 商事事項에 관
하여만 第3者에 대하여 船舶所有者와 동일한 責任을 부담한다는
說이다.⁴⁴⁾

7 占有移轉 없는 特殊契約說

이 說에 따르면 定期傭船契約은 船舶의 占有移轉은 없으나 그
自由使用이 定期傭船者에게 위탁되어 傭船者が 사용·수익할 것을
약속하는 점에서 物件의 賃貸借이고 또 船長 기타 船員의 勞務
의 供給을 약속하는 점에서 賃貸借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하
여 「船舶賃貸借 마이너스 占有移轉」의 形態라고 한다. 그리하여
내외적 책임관계에 관하여는 特別한 規定이 없으므로 定期傭船者
에게 船舶賃借인이 第3者에 대하여 船舶所有者와 동일한 地位를
인정받는 規定(韓國商法 766條 해당, 日本商法 704條)을 유추
적용한다는 說이다.⁴⁵⁾

(8) 企業賃貸借說⁴⁶⁾

定期傭船契約의 실질관계를 企業의 賃貸借의 關係라고 파악하는

44) 田中誠二, 前掲書, 128面

45) 釜田宏, 前掲書, 179面이하 참조

46) 이 부류에 속하는 說로서 擴張解釋說이 있다. 이 說은 定期傭船契
約의 本旨생에 있어서는 對內的 효과는 부수적인 의미밖에 없고,
그 종점은 내외적 책임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제3차 보호의 견지
에서 船舶所有者인 것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傭船者에 대하여 船舶
賃貸借에 관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하려는 학설이다.

鈴木竹雄 新版商行爲法·保險法·海商法, 東京, 海文堂, 1981, 130面

또한 占有移轉없는 特殊契約說이나 企業質貸借說, 企業組織質貸借說, 擴張解釋說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禁反言說의 경우에는 第3者가 外觀上 定期傭船者를 船船所有者로 믿었을 경우에만 第3者에 대한 責任을 부담하며, 海技·商事 區別說의 경우는 商業上의 管理에 대한 부분에서만 第3者에 대한 責任을 지게 된다. 또한 類型說의 경우에도 “船舶指向型”의 경우에만 定期傭船者가 제3者에 대한 責任을 지게 된다.

3. 學說의 批判 및 結語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學說의 對立이 있다. 그 만큼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의 파악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을 正確히 파악하여만 定期傭船者의 第3者에 대한 對外的 關係를 斯明할 수 있기 때문에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에 대한 斯明은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의 確立을 위하여 반드시 必要하다.

위의 考察을 바탕으로 定期傭船契約에 있어서 定期傭船者의 法的

52) 田中誠二, 前揭書, 129面: 定期傭船에 대한 判例의 变천에 대하여는, 萩原正彦, 前揭書, 461面이하 참조.

의 規定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定期傭船者와 法의 地位에 관하여는 學說, 判例에 의하고 있다. 定期傭船契約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定期傭船者에게 日本 商法 第 704 條(우리 商法 766 條에 해당하며 船舶賃借人は 第 3 者에 대하여 船舶所有者와 동일한 權利·義務를 갖는다는 規定)를 적용하여 船舶裝置者로 다루어 第 3 者에 대한 직접적인 責任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⁵⁰⁾

日本의 舊學說은 定期傭船契約을 純運送契約으로 보고 따라서 定期傭船者は 船舶을 僑船하여 運送을 청구하는 權利를 가진 者, 즉 運送依賴人으로 다루어 船舶賃借人과는 전연 다른 地位를 가진 者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商法 第 704 條의 유추적용을 부인하였다. 이 전해는 아직 海運實務界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⁵¹⁾ 變態的 運送契約說을 취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1928년의 日本 大審院 判決 이후 判例는 定期傭船契約을 船舶賃貸借와 勞務供給契約과의 결합이라는 混合契約說에 따르고 있다. 이 전해에 의하면 定期傭船契約에는 당연히 船舶賃借의 權利·義務를 規定한 日本商法 第 704 條가 적용되므로 定期傭船자는 第 3 者에 대하여 船舶所有者와 같은 責任을 진다고 한다.⁵²⁾ 즉 定期傭船者에 대하여 企業의 主體性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50) 田中誠二, 前揭書, 112-113面

51) 上揭書, 126面

이 說은 앞에서의 영미법상의 학설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日本 海運集會所에서 제정한 定期傭船契約書(日文) 第 31 條(契約의 本質)에서 “이 契約은 條文 및 用語의 여하를 불구하고 賃借 契約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 定期傭船契約이 賃貸借契約임을 부인하고 있다.

說이다. 定期傭船契約은 船長 기타 船員이 乘務하는 船舶을 일정 기간 僑船에 제공하는데 船員은 船舶과 有機的 一體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른바 「 움직이는 企業 」을 그대로 貸貸하는 것이라고 본다.⁴⁷⁾ 船舶所有者는 資本利子로서의 僑船料를 取得하고 定期傭船者가 企業損益 归屬者로 된다고 하며, 또한 實定法의 적용은 商法上의 船舶賃貸借에 準하여 취급한다. 따라서 定期傭船者의 地位도 船舶賃貸借人에 準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 説을 발전시켜 定期傭船契約은 「海上企業 組織의 有機的 單位의 貸貸借」로서 定期傭船者는 海上企業主體로서 海上企業活動으로부터 발생하는 一切의 權利·義務關係에 관하여 그 귀속주체로 된다고 하는 說이 있다.⁴⁸⁾

⑨ 連帶責任說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은 실질적으로 보아 企業의 貸貸借의 관계이지만 船舶所有者는 船長 기타 船員의 任免權을 가지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船長이 航行(navigation)에 관하여 一次的責任을 지며 船舶自體의 管理에 관하여도 船舶所有者에게 契約上의 義務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船舶의 航行과 船舶의 管理에 관하여 第3者에게 준 損害에 대하여는 船舶所有者도 定期傭船者와 더불어 海上企業者로서 不法行爲責任을 진다는 學說이다.⁴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日本法도 定期傭船에 관하여 明文

47) 石井照久, 海商法, 東京, 有斐閣, 1974, 173面

48) 이 說이 이른바 企業組織賃貸借說이다. 田中誠二, 前掲書, 128面

49) 川又良也, 270-271面

¹ 見前引書第 12 頁。

地位에 대한 學說上의 問題點을 지적하여 보면 ⁵³⁾ 다음과 같다.

여기서 “運送契約說”에 관하여 보면一般的으로 定期傭船者는 自己의 이름으로 海上企業을 經營하는데 이를 航海傭船者와 같은 단위의 運送依賴人으로 보는 것은 定期傭船契約의 特질을 無視한 것이라는 批判을 免하기 어렵다. 또 變能的 運送契約說의 경우도 第3者에 對外 關係(對外關係)에 있어서는 運送契約說과 重複의 問을 띠는다.

『人間法理學』의 法的 性質과 道義 論說의 批判에 대하여는 다음과

林東皓，前揭論文，118-119面
田中誠二，前揭書，129-145面

또 “企業質貸借說”과 “企業組織質貸借說”에 대하여서는 定期
傭船契約이 海上企業의 各種 企業財產과 經營者의 地位의 包括的
인 賃貸借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擬制이며 企業組織의 유기적 단
위의 賃貸借라는 法的 概念도 분명한 것이 아니며 定期傭船契約의 경
우는 단순히 船舶所有者의 企業設備의 一部를 個別的으로 賃貸하는 것
에 불과하다는 批判이 있다.

“海技·商事 區別說”에 대하여서는 海技事項과 商事事項의 구
별기준이 반드시 明白한 것이 아니라는 難點이 있고 또 類型說
(定期傭船契約을 積荷指向型과 船舶指向型으로 나누는 견해 이외
에 運送型과 企業型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여기에 包含시킬 수 있
을 것이다)은 當事者가 추구하는 契約目的의 傭船契約의 約款解
釋에 고려되어야 類型化가 가능할 것으로 이 說에 의하면 定
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을 一般的, 客觀的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第3者의 責任에 관한 連帶責任說”에 대하여는 이 說이 被
害者의 구제라는 觀點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定期傭船契
約의 解釋에 의하여 船舶所有者와 傭船者와의 地位 및 權利關係
가 밝혀지면 왜 다른 當事者의 踏實事由에 대하여 連帶責任을 쳐
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獨逸, 日本 등 大陸法系 國
家의 많은 學說과 判例는 定期傭船契約을 海商行爲에서 유래된 特
殊한 形態로 파악하기 보다는 一般 民法上의 賃貸借契約과 勞務
供給契約의 結合한 混合契約으로 보아 賃貸借契約의 法理를 적용

定期傭船者와 法의 地位에 關한 研究

시키고 있다. 이에 반하여 英美에서는 定期傭船契約을 海商行爲의
特殊의 云種類로 認정하여 獨自的인 하나의 契約形態로 看做
하고 있는데 이를 進一步로 認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定
期傭船契約은 本身을 無視한 채 航海傭船契約과 同様으로 同一視
하는 경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定期傭船契約은 海商行爲에서 發達한 長久의 契約形態로서
는 定期傭船契約의 第3者인 船主, 船員, 裝備者, 定期傭船者, 本船
地主의 之等의 情況에 依하여 判斷하기는 困難하고 定期傭
船契約의 本船의 情況에 依하여 判斷하는 場合의 경우에 本船
의 船主(或 船員)이 本船에 係屬하는 것이라.



定期傭船者와 法의 地位에 關한 研究

현된 조항을 實證的으로 分析하여 定期傭船者의 地位를 考察하고
자 한다.

여기서의 내용들은 船舶所有者와 定期傭船者사이의 對內의 관계

第4章 主要標準約款上 定期傭船者의 地位의 實證約 分析

第1節 序 論

定期傭船에 관한立法은 20세기에 와서 이루어졌고立法이 되었다 하더라도 制定된 法規는 任意法規이므로 실무상으로는 定期傭船에 대하여 몇 가지 종류의 標準約款이 주로 使用되고 있다.¹⁾ 여기에서는 定期傭船에 관한 主要約款들 중에서 Baltime 書式과 NYPE 書式을 중심으로 約款의 조항가운데 定期傭船者의 地位와 관

1) 定期傭船契約에 대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主要 約款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Baltime 定期傭船契約書；불티·白海同盟 (The 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 이 1911年 안트워프 총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후 1912년에 베를린 회의에서 개정되었다. 그후 불티·白海海運同盟은 불티國際海運會議 (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로 발전하여 여러 차례의 會合끝에 1939年 3月에 현행의 불타임契約書가 완성되었고, 第2次 세계대전후에는 1950년에 다시 개정되어 「Baltim 1939」의 약호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Baltime 書式의 구성과 약관 해설에 관하여는, 裴炳泰, 前揭論文, 167面이하; 萩原正彥, 前揭書, 13面 이하 참조.
- ② The New York Produce Exchange Time Charter ; New York 生產去來所가 1913年 11月 6日에 제정한 定期傭船契約書로서 그후 1921年 10月 20日, 1931年 8月 6日, 1946年 10月 3일에 개정되었고 흔히 "Produce Form" 이라 호칭되며 NYPE T/C의 略號로 사용된다. NYPE Form은 Baltime Form과는 달리 lin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28개조로 분류할 수 있다. 萩原正彥, 前揭書, 49面이하 참조. NYPE Form의 내용분석에 관하여는, Michael Wilford, Terence Coghlin, Nicholas J. Healy, Jr., John D. Kimball, Time charters, 2nd ed., London,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2 참조.
- ③ ASBATIME; 1981年에 제정되었으며 ASBA는 The Association of Ship Brokers and Agents 의 약자이다. ASBATIME은 NYPE Form에 第28條에서 第38條까지의 추가조항(rider)이添附되어 있다. ASBATIME에 관하여는, 萩原正彥, 前揭書, 63 - 88面 참조.

荷作業(trimming), 積置(荷底板, 分界板을 포함하나 이미 本船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揭荷作業, 檢量, 檢收, 積荷의 引渡, 船口検査등 任務遂行中の 職員 또는 人員에 제공한 식사, 檢疫(燻蒸, 殺菌, 消毒을 포함)으로 인한 遲滯費 등을 포함하기로 본

시카고 있다. 이에 반하여 英美에서는 定期傭船契約을 海商行為의
주체가 由來類型임을 인정하여 獨自的인 하나의 契約形態로 當事
所定 但지에 이전 進一步로 認識하고 有する 있다. 그중에서 定
期傭船契約은 本質上 無視可 並 航海傭船契約과 同屬一類
의性质이 有된다. 但지에 이전



第4章 主要標準約款上 定期傭船者의 地位의 實證約 分析

第1節 序 論

定期傭船에 관한立法은 20세기에 와서 이루어졌고立法이 되었다 하더라도 制定된 法規는 任意法規이므로 실무상으로는 定期傭船에 대하여 몇 가지 종류의 標準約款이 주로 使用되고 있다.¹⁾

여기에서는 定期傭船에 관한 主要約款들 중에서 Baltimme 書式과 NYPE 書式을 중심으로 約款의 조항 가운데 定期傭船者의 地位와 관

1) 定期傭船契約에 대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主要 約款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Baltimme 定期傭船契約書；불턱·白海同盟 (The 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 이 1911年 안트워프 총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후 1912년에 베를린 회의에서 개정되었다. 그후 불턱·白海海運同盟은 불턱國際海運會議 (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로 발전하여 여러 차례의 會合끝에 1939年 3月에 현행의 볼타임契約書가 완성되었고, 第2次 세계대전 후에는 1950년에 다시 개정되어 「Baltimme 1939」의 약호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Baltimme 書式의 구성과 약관 해설에 관하여는,
襄炳泰, 前揭論文, 167面이하 ; 萩原正彥, 前掲書, 13面 이하 참조.
- ② The New York Produce Exchange Time Charter ; New York 生產去來所가 1913年 11月 6日에 제정한 定期傭船契約書로서 그후 1921年 10月 20日, 1931年 8月 6日, 1946年 10月 3일에 개정되었고 특히 "Produce Form"이라 호칭되며 NYPE T/C의 略號로 사용된다. NYPE Form은 Baltimme Form과는 달리 lin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28개조로 분류할 수 있다. 萩原正彥, 前掲書, 49面이하 참조.
NYPE Form의 내용분석에 관하여는,
Michael Wilford, Terence Coghlin, Nicholas J. healy, Jr., John D. Kimball, Time charters, 2nd ed., London,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2 참조.
- ③ ASBATIME; 1981年에 제정되었으며 ASBA는 The Association of Ship Brokers and Agents 의 약자이다. ASBATIME은 NYPE Form에 第28條에서 第38條까지의 추가조항(rider)이添附되어 있다.
ASBATIME에 관하여는 萩原正彥, 前掲書, 63-88面 참조.

그러나 傭船者의 이러한 義務도 船舶이 引渡되기 전에는 개시되지 않는다.³⁾

2. 傭船料(hire)의 支給

Baltimre 第 6 條는 「傭船者は 第 1 條(傭船期間)에 따라 傭船開始하고 返還할 때까지 船舶所有者에게 傭船料로서 30 日에 대하여」를 支給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의 定期傭船料는 海上企業組織을 價船者가 사용하는 대가로서 一定期間을 기준으로 船舶所有者에게 支給하는 것이므로 個個運送에 있어서의 운임이나 航海傭船에 있어서의 價船料(charter pay)와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이를 海上企業의 單位組織의 貸貸料라고 보아야 한다는 설해⁴⁾도 있으나 貸貸料로 보기에는 定期傭船契約의 본질상 부리生 있다. 왜냐하면 船舶貸貸借契約과 달리 定期傭船契約은 船舶所有者が 船舶을 定期傭船者에게 貸貸하는 것이 아니라 船員이 땀과 船舶을 使用·受益하도록 service의 제공을 해주는 契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定期傭船契約上 價船料(hire)는 船員이 땀과 船舶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NYPE 書式 第 4 條에서도 「傭船者は 항상 船舶의 使用과 價船(the use and hire of the said vessel)에 대하여 一定 비율로 價船料를 支給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러한 비율은 ITNFS (International Tanker Nominal Freight Scale)와 같은 표준율에 따라 계산되기도 한다.⁵⁾

3) Wilford, op. cit., p. 141.

4) 裴炳泰, 前揭論文, 173面.

5) Ivamy, op. cit., p. 35.

또한 僱船料는 Baltimre이나 NYPE書式 모두 현금으로 先給할 것을 明記하고 있다.⁶⁾

한편 船舶所有者의 過失로 僱船者에게 해당 船舶의 使用期間을喪失하게 하는 契約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僱船者는 喪失한 기간에 대하여 僱船料를 적절한 비율로 減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權利는 船舶所有者的 다른 契約違反이나 過失에 까지 확장되지 않는다.⁷⁾

한편 정기적·규칙적으로 僱船料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船舶을 回收할 권리는 船舶所有者が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後에 변제의 提供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⁸⁾

3. 安全港 (safe ports)의 利用

定期僱船契約에서 僱船者는 船舶을 運航시킴에 있어 安全港만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그 港은 그 船舶이 入港하도록 지시

6) Baltimre 第6條

"— Payment of hire to be made in cash, in the currency stated in Box 20, without discount, every 30 days, in advance, and in the manner prescribed in Box 20".

NYPE 第4條

"Payment of said hire to be made in New York in cash in United States Currency semi-monthly in advance ..."

7) Ivamy, Ibid p. 36.

8) 英 Mardorf Peach & Co., Ltd. v. Attica Sea Carriers Corporation of Liberia: The "Laconia" (1977), 1 All E.R. 545.

梁承圭, 判例教材, 保險法·海商法, 421-423面.

되어진 때 뿐만 아니라 그 船舶이 도착할 때도 역시 安全하여 야 한다.⁹⁾

Baltimme 書式 第 2 條(航路)에서는 「…本船이 언제나 浮揚하여 安全하게碇泊할 수 있는 양호하고 安全한 港 또는 기타의 장소에 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즉 安全港만을 사용하도록(safe port use only) 傭船者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

여기서 安全港이란 本船의 物理的 安全뿐만 아니라 政治的으로나 法律的으로도 没收등의 危險을 받는 港이 아니어야 한다.

NYPE 書式 第 6 條에서는 「荷物은 傭船者 또는 그 代理人이 指示하는 곳에서 船積 또는 揚荷되어야 하는데 그 때 潮汐의 어떤 때라도 船舶이 항상 安全하게 浮揚하여 系泊할 수 있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安全(safety)의 문제는 事實上의 문제¹⁰⁾(a question of fact)이지만 어떤 港이 安全港(safe port)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어져야 할 기준은 法律上의 문제(matters of law).^{11), 12)}

安全港의 지정은 傭船者가 하는 것이므로 만약 傭船者가 不安全港으로 船舶을 도킹하고 그로 인하여 船舶에 損害가 발생하였다면 傭船者は 船舶所有者에게賠償을 해야 한다.¹²⁾ 이러한 취지

9) Scrutton, op. cit., p. 128.

10) 英 Patiale Shipping Co. Ltd. v. Gaus Steamship Line (1914-15), All E.R. Reg., 912.

11) Wilford, op. cit., p. 104.

12) Ivamy, op. cit., p. 30.

의 判例로는 「船舶이 偿船期間중에 Hamburg 에 가도록 指示를 받고 船長이 그 指示에 따랐는 바 船舶이 그 港에 근접하여 있던 열음에 의하여 損害를 입었다. 따라서 이 경우 偿船者는 그러한 損害에 대하여 責任이 있다」고 判決한 것이 있다.¹³⁾

만약 指示된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그 港이 不安全하게 되었다면 船舶所有者는 다른 港을 요구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船舶이 不安全港으로 가도록 指示되고 船長이 過失로 그 港에 入港하거나 碩泊하게 된 경우에 船舶이 損害를 입은 때에는 그 過失이 偿船者の 指示와 船舶에 대한 損害와의 원인 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충분히 중대한 것이라면 偿船者は 免責된다.¹⁵⁾

安全港과 관련된 定期偿船者の 다른 의무로는 結冰港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는 의무이다. 이 내용은 Baltime 書式 第 15 條(除外港 및 結冰)와 NYPE 書式 第 25 條(結冰港)에서 規定하고 있다.

본래 船長은 Baltime 第 9 條나 NYPE 第 8 條의 使用約款에 의하여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이 規定들은 그러한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이다. 그러나 結冰港이라 하더라도 碎冰船이 있어서 港이 년중 개방되어 있는 곳이면 그렇지 아니하다.¹⁶⁾

13) Grace (G.W) & Co. Ltd., v. General Steam Navigation Co. Ltd, (1950)

1 All E.R 201.

14) Scrutton, op. cit., p. 128.

15) Ibid p. 130.

16) Limerich SS. Co. v. stott (1921) 2K.B. 613.

Wilford, op. cit., pp. 413 - 414.

또한 船舶이 指示된 港을 入港하거나 出港할 때 얼음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통상적으로 (ordinary) 갖추어야 할 설비를 갖
추지 못하였다면 이 約款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때문에 그 港은 不安全港으로 된다.¹⁷⁾

하던 Baltimre 書式 第 21 條 (戰爭)는 이를바 數爭約款으로, 定
期傭船者는 미리 艦舶所有者와 충돌을 막을 경우를 대비하도록 戰
爭危險이 있는 곳에의航海를 하여서는 안되도록 规定하고 있다.

4. 艦舶의 返還 (redelivery)

Baltimre 第 7 條은 傳船者の 船舶의 返還義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船舶은 傳船期間의 만료와 동시에 傳船者
가 船舶의 引渡事 뿐만 아니라 잡우 영호한 狀態로 (정정한 自然
의) 소모는 주어서 傳船者が 選擇하는結果되지 아니하는 港에
서 10일 이내에 그 오후 6시 (或 12월 25일 2時) 사이에 改還
되어야 한다. 다만 船舶의 返還일이 일요일이거나 法定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다.」

傳船者는 船舶所有者에게 船舶의 返還을 定日을 지연한 10日 이내
에 해야 한다. 다만 船舶의 増加로 傳船 기간이 傳船期間을 초과
하는 경우에 船舶자는 本船을 使用하여 그 航海를 完了한 후
에는 그만 傳船終了期日을 지나 船舶의 本船으로 船舶을 返還
할 경우 10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傳

17) The Sesses oak (1950), 834, L. Rep. 297.
Willard, op. cit., p. 414.

船終了日 이후의 期間에 대하여서는 價船市場價格이 本契約上의 價船料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價船者는 그 市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이 條는 價船者가 價船期間內에 船舶을 返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던중 價船料가 오른 경우에는 초과 使用期間에 대하여 오른 價船料를 支給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價船者는 航海를 미리 계산하도록 하여 航海 완료와 價船期間의 완료가 맞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데 수일 후면 期間滿了임을 알면서 수주일 또는 수개월이 걸릴 航海를 지시하는 것은 이 條의 規定上 인정될 수 없고 價船者가 계약위반의 責任을 부담하여야 한다.¹⁸⁾

한편 NYPE 書式도 第 4 條에서 「自然的인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당시의 양호한 狀態로 船舶所有者에게 船舶을 返還하여야 하며, … 또한 本 船의 返還豫定港에 관하여 船舶所有者에게 _____日前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定期價船者の 船舶返還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價船者는 만일 價船契約下에서 계약위반의 결과로 引渡 받은 때보다 더 나쁜 狀態로 船舶을 返還하게 되면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한다.¹⁹⁾ 또한 價船者는 비록 價船契約違反의 결과로 船舶이 損傷되었더라도 유효한 返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船舶所有者는 그 返還을 거절할 수 없고 단지 船舶의 損傷에 대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²⁰⁾

18) 裴炳泰, 前揭論文, 175面.

19) Wilford, op. cit., p. 151.

20) Ibid., p. 152.

한편 傭船者는 船舶을 Baltimre 第 9 條나 NYPE 第 4 條에 따
라 지정된 港이나 場所에 返還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傭船者가
위반하였을 경우 船舶所有者는 損害에 대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
다.²¹⁾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船舶의 返還은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傭船者에 의하여 船舶所有者에게 船
舶이 返還될 때의 船舶의 返還(redelivery)이라는 말은 傭船契
約에서 使用되는 말이 아니라 船舶賃貸借契約에서 사용되는 것이
라는 점이다. 따라서 船舶이 船舶所有者的 占有下에서 船舶所有者
의 통제가 행사될 수 있을 때 船舶이 返還되었다고 할 수 있
다.²²⁾

第 3 節 定期傭船者의 對外的 責任과 관련된 主要約款

여기에서는 標準約款의 여러 내용중에서 定期傭船者의 對外的 責
任과 관련된 約款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대표적인 約款인 使
用 및 補償約款과 不滿約款 그리고 責任과 免責約款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使 用 및 補償約款과 不滿約款

(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 : mis conduct clause)

Baltimre 第 9 條(船長)는 「 船長은 모든 航海를 가장 신속히 수

21) Wilford, op. cit., p. 153.

22) Carver, op. cit., p. 460.

행하고 本船船員으로 하여금 관습상의 助力を 제공하도록 한다.

船長은 本船의 使用과 代理店業務, 또는 기타 業務 (other arrangement)에 관하여 價船者의 指示에 따라야 한다. 價船者は 船長士官, 代理人이 船荷證券 또는 기타의 證書에 署名 (記名捺印) 하던가 또는 이러한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責任이나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本船의 書類의 不正確 또는 貨物의 越送 (overcarring goods)으로 발생하는 一切의 결과 또는 責任에 대하여 船舶所有者에게 補償한다. 船舶所有者は 荷物의 不足, 混合, 記號 또는 荷物個數, 包裝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하고 또는 不良한 積置 기타로 인하여 발생한 荷物의 損傷 또는 賠償請求에 대하여 責任지지 아니한다. 만일 船長, 士官, 機關士의 行爲에 대하여 價船者로서 만족치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船舶所有者は 不滿報告를 受領하면, 즉시 그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하고 또 실행할 수 있으면 그들의 任命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 NYPE 書式 第8條 (船長)에서도 「船長은 價船者 또는 그 代理人의 지시에 따르며 만일 價船者が 船長, 士官, 機關士 등의 行爲에 不滿이 있는 경우에는 船舶所有者は 그 不滿의 報告를 받고 조사하여 필요하다면 任命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使用이라 함은 船員들을 포함한 사람의 使用 (employment of persons)이 아니라 船舶의 使用 (employment of ship) 을 의미한다.²³⁾

23) Wilford, op. cit., p. 197 ; Carver, op. cit., p. 370.

이러한 規定들은 船長이 傭船者의 指示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
나 定期傭船契約에 근거하지 아니한 傭船者의 指示에 대하여는 船
長은 必要한 責任이 없다.²⁴⁾ 즉 船長은 本船을 危險에 빠
지게 하거나 機能能力을 끊게 하는 指示에 대하여는 거절할 權
利를 가진 船主이다. 아니라 거절할 義務가 있다.²⁵⁾

또한 定期傭船契約上의 使用約款은 傭船者에게 船舶의 航行(navi-
gation)과 航路 指引를 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는 것을 아
니다.²⁶⁾ 즉 安全航海를 위하 도를 고치는 船長의 聰明에 따라 경
험되어야 하기 때문에 航行에 관하여 상항도 傭船者의 第三事項의
범위에서 재의된다.²⁷⁾

예를들면 傭船者が 명령한 航海上에 航海중 水群을 만난 경우 船長
이 무리한 航海水 속에 강행하다가 本舶에 損傷을 입었을 때에는 傭
船者は 이러한 狀況에서 자체 선속의 航海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는 價船者에게 責任이 있다.²⁸⁾

마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航海는 두 가지의 概念을 포함한다
고 알 수 있다. 첫째는 船舶의 航행과 航運의 차이 및 차이
점으로서 船舶을 조종하여 行進하는 航行(navigation)이다.²⁹⁾

24) Wilford, op.cit., p. 187.

25) Portentous Steamship v. Liverpool & Glasgow Salvage Association
(1829), 34 L.L. Rep. 45, 191, p. 195.

26) Larmage Steamship Co. Ltd., v. Es 1945, 1 All ER, 329, HL.

따로 價船者에 대하여 航海권으로 간주하여 하여 한가지로 航海上 船舶
의 인수 차자의 구단여부는 船舶에게 같다. Teamy, op.cit., p. 47.

27) 裘炳泰, 前揭論文, 177 頁; Wilford, 1914, p. 187.

28) Eric Sch. Co. v. Stott (1921) 2 K.B. 612 ; 裘炳泰, 前揭論文, 177 頁.

고, 둘째는 船舶의 장소적 이동, 즉 船舶을 어떤 港에서 다른 港으로 이동케 하는 것 (voyages) 을 의미한다.²⁹⁾ 포준약관에서 船長이 傳船者의 航海指示에 따라야 한다고 할때의 航海는 두번째의 의미인 商業上의 航海 (voyages) 를 말한다.³⁰⁾

따라서 船長의 海技上의 조치로 인한 本船의 損害에 대하여서는 傳船者가 責任을 지지 않지만 船長이 物件運送을 위한 傳船者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발생한 本船의 損害에 대하여는 傳船者가 責任을 부담한다.

한편 Baltime 書式과는 달리 NYPE 書式은 補償約款을 明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NYPE 書式도 補償 (indemnity) 을 順次적으로 擔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³¹⁾

Baltime 第 9 條의 규정에 따라 傳船者가 責任을 부담하는 요건은 그 損害가 傳船者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그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³²⁾

즉, 船舶所有者는, 法律의 擔保 또는 明示된 合意에 의하여 (either by implication of law or by express agreement), 這傳船者의 行爲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름으로써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 보상받을 權利를 가진다.³³⁾

29) 戸田修三, 定期傳船契約の 法的 構成, 海運 581 號, 日本海運集會所, 1970. 2, 15. 15.

30) 上掲論文.

31) Wilford, op. cit., p. 196 ; Scrutton, op. cit., p. 375. ; Carver, op. cit., p. 484.

32) Larrinage ss. Co. V. The King (1945). A.C. 246, 263.

The White Rose (1969) 2 Lloyd's Rep. 52.

Wilford, Ibid., p. 199.

33) Scrutton, op. cit., p. 374.

그리고 만일 船長이 定期傭船契約上 約定된 危險보다 더 큰 危險을 船舶所有者에게 부담시키는 船荷證券의 발행을 요구받는다면 추가되는 危險에 대하여 船舶所有者は 定期傭船者에게 補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³⁴⁾

한편 이 補償約款은 定期傭船契約의 전체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³⁵⁾

아울러 이러한 定期傭船者의 補償責任에 대한 몇 가지 확립된 原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⁶⁾ ① 航行 (navigation)이나 航行上의 사고 (incident of navigation)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責任은 船舶所有者가 부담한다.³⁷⁾ ② 특별한 荷物을 선적하라는 지시는 使用 (employment)과 관련된 指示이며, 그 指示에 순응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인한 損害도 補償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Baltimme 書式과 NTPE 書式은 船長과 士官의 勤務나 行爲에 不滿이 있을 때 傭船者는 이들의 교체를 船舶所有者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規定하고 있는데, 이 約款의 내용으로 볼 때 船長등을 교체시킬 수 있는 主體는 어디까지나 船舶所有者임을 유의하여야 한다.³⁸⁾

34) Winford, op. cit., p. 197.

35) Scrutton, Ibid., p. 375.

36) Ibid., pp. 375~376.

37) Ivamy, op. cit., p. 47.

38) 戸田修三, 前掲論文, 15面.

이상을 종합하면 定期傭船者는 船舶을 貨貸하여 使用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船長 기타 船員의 任免權은 船舶所有者에게 있다. 그리고 航行 (navigation) 상의 損害는 船舶所有者가 부담함으로 定期傭船者에게 船舶賃借人の 地位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2. 責任 및 免責約款

Baltimme 書式 第13條 (責任과 免責)는 船舶所有者와 僑船者의 責任의 원인과 責任의 分配를 規定하고 있다.

먼저 船舶所有者가 責任을 부담하는 원인은 ① 本船의 引渡遲延 ② 僑船期間中の 船舶의 遲延 ③ 船積荷物의 減失 · 毀損등인데 이 러한 사유들이 本船의 塾航能力의 具備나 航海의 裝備에 있어서 船舶所有者 또는 船舶管理人에게 상당한 주의가 흠풀되어 있어서 발생한 경우 또는 船舶所有者나 그 船舶管理人的怠慢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들 자신의 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限하여서만 船舶所有者が 責任을 진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船舶所有는 비록 자기의 使用人の怠慢으로 이하여 어떠한 損害를 입

isks) 이므로 海上運送人인 定期傭船者가 그 責任을 부담하는 것
는 당연하다.

한편 傭船者는 本契約條項에 反하여 船積한 荷物에 의하여 本
船 또는 船舶所有者에게 損失 또는 損害를 발생케 하던가, 또는
燃料船積, 荷物의 船積, 積置, 揭荷에 있어서의 부적당하고 또는 부
주의한 작용에 의하여, 또는 傭船者나 그의 使用人의 慢慢な 行
為 또는 遺失에 의하여 本船이나 船舶所有者에게 損失 또는 損
害를 발생한 때에는 그 責任은 부담하여야 한다 (Baltine 第
13條 4項). 즉 定期傭船者が 船舶를 使用하는³⁹⁾ 중에 船舶所有者
또는 本船에 損害를 입히면 責任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NYPE 書式 第16條 (exceptions) 는 「傭船의 船舶이 爐
失되거나 先拂되었다나 2) 반대급부를 향자 않은 金額은 狀況으로
로 傭船者에게 返還되어야 하며 天災, 公敵, 火災, 君主에 의한 抑
止, 海上, 航用, 機械, 보일러와 航海에 있어서의 一切의 危險
및 事故 그리고 航行上の 過失에 관하여는 本 價船契約을 통하
여 免責된다」고 規定⁴⁰⁾하고 있다. 이 規定은 1934年 船荷
證券統一契約 第4條 第2項의 免責事由처럼 구체적인 免責事由를
明記하여 예기해 해당될 경우에는 相互免責되다는 規定이다.

39) 여기서 本船의 使用이란 船荷證券에 記載되는 바나라, 연료, 선적, 화물의
전송, 船舶의 航道과 같은 「海上 貨物運送」(裝卸業, 航運論文, 182 頁,
1957 年 6 月 1 日) 美國海上物件運送法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46)에
초동되어 있는 바를 의미 (§ 130, 2).

위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하여 보면 定期傭船者를 船舶質借人の地位와 동일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定期傭船者와 船舶所有者の責任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船舶의 安全과 堪航能力등 航行 (navigation)에 대하여는 船舶所有者が 責任을 부담하고 本船으로 運送되는 荷物에 대하여는 그 荷物의 滅失, 毀損등의 損害가 船舶의 堪航能力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定期傭船者가 責任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第 4 節 結 語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널리 使用되고 있는 標準約款을 中心으로 본다면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을 船舶賃貸借豆把握하여 定期傭船者에게 船舶賃借人の 地位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標準約款에 의하면 定期傭船契約은 船舶所有者가 定期傭船者에 대하여 船舶 및 船員을 賃貸하는 것이 아니라 定期傭船者에게 使用을 맡기는, 다시 말하면 機能의 提供 (service) 을 하는 契約으로 把握되기 때문이다.⁴¹⁾

즉, 標準約契을 分析하여 본다면 Baltime 第 9 條(船長)는 「船員은 모든 航海를 신속히 수행하고 本船 乘務員으로 하여금 慣習上의 助力を 提供하도록 한다. 船長은 本船의 使用, 代理店業務, 또는 기타 業務에 관하여는 傭船者の 指示에 따라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航海에 관하여 船長은 傭船者の 指示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이 條項을 重視하여 定期傭船契約을 船舶賃貸借契約과 労務供給契約(或)混合契約이라고 하는 混合契約說의 理論의 根據을 도출 하려고 하니 판례(1928年 日本 大審院 判決)와 일부 航業⁴²⁾이 있다.

그러나 Baltime 第 9 條에서의 「航海는 voyage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航海는 두 가지의 概念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船舶의 運航과 관련된 知識 및 技術上으로 船舶을 조종하여 바다를 航行(navigation)한다는 意味이고, 둘째는 船舶의 장

41) Baltime 第 9 條 및 NYPE 第 8 條 参照

42) 戸田修三, 前揭論文, 15面.

소적 이동, 즉 船舶을 어떤 港에서 다른 港으로 이동케 하는 것 (voyage)을 意味한다. 前者は 航海技術上의 문제이며 後者は 商業上의 문제이다. 標準約款에서 船長이 價船者의 航海指示에 따라야 한다고 할때의 航海는 商業上의 航海를 意味한다. 따라서 船舶의 技術과 知識이 요구되는 航行 (navigation)의 責任은 船舶所有者가 負擔하게 되고, 商業上의 航海 (voyage) 責任은 運送人인 定期價船者가 負擔하게 된다.

한편 荷物에 대한 責任은 船舶의 塗航能力 (Baltimre 第3條, NYPE 第1條)을 原因으로 하여 발생한 것은 船舶所有者が 負擔하게 되지만, 荷物의 船積, 揭荷등 運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은 價船者が 負擔하게 된다.

또한 定期價船契約을 混合契約說 및 貨貸借說과 같이 船舶賃貸借契約에 準하는 것으로 把握하게 되면 貨貸借契約의 性質上 價船者が 船舶의 管理까지 責任을 負擔하게 하는데 이것은 不當하다. 왜냐하면 定期價船者は 運送에 따른 商事部分만을 責任지기 때문이다.⁴³⁾

따라서 우리나라의 通說과 같이 定期價船契約을 船舶賃貸借契約에 준하는 混合契約으로 인정하여 定期價船者の 第3者에 대한 關係에 商法 第766條 (船舶賃貸借와 第3者에 대한 法律關係)를 類推 適用하여 定期價船者를 船舶賃貸借人과 같은 法的 地位로 인

43) Baltimre, 第3條, 4條, 13條 및 NYPE 第1條, 2條 參照.

정하는 結論⁴⁴⁾에는 찬성할 수 없다. 결국 定期傭船契約의 性質은 船舶所有者와 責任負擔部分과 定期傭船者的 責任負擔部分⁴⁵⁾로서 連述契約의 型態임을 알 수 있다.



44) 定期傭船契約에 關する 船舶使用人과 船舶所有者 應用하여 前註 第765
條을 適用하는 것이 우려나리. 通說의
鄭熙榮, 朱承圭, 前揭書, 156面
孫昌煥, 前揭書, 139-140面.
徐憲基, 前揭書, 519-520面.
崔基元, 前揭書, 535面.

第5章 定期傭船者의 對外的 責任에 관한 具體的인 事例의 考察

第1節 序 言

定期傭船契約에서 契約當事者인 船舶所有者와 價船者와의 內部關係 즉 船舶所有者와 定期傭船者 상호간의 権利·義務 및 責任分担등은 價船契約內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定期傭船契約에서 第3者에 대한 責任은 일단 運送行為를 인수한 運送人이 부담하여야 할것이므로 결국 船舶所有者와 定期傭船者중 누구를 運送人으로 하는가에 따라 責任의 귀속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責任의 유무와 범위를 따질때에 우리나라나 日本등의 大陸法系 國家에서는 먼저 ⁵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을 謙하여 그것이 典型契約중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를 살피고 船舶所有者나 價船者중의 한사람에게 항상 그 責任이 귀속한다든가 또는 사고의 성질에 따라서 船舶所有者에게 귀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定期傭船者에게 귀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論하는 것이 一般的이다.¹⁾ 그러나 定期傭船契約에 대하여 明文의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추상적인 概念定立만으로 第3者에 대한 책임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실제 使用되는 標準契約들의 충실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田中誠二, 前掲書, 125面이하; 戸田修三, 海商法, 102面이하;
林東基, 前掲論文, 115面

따라서 여기에서는 英·美·日의 判例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定期傭船者의 第3者에 대한 責任²³을 살펴 보고자 한다.

第2節 定期傭船者の 對外的 責任에 관한

具體的인 事例의 考察

1. 概 說

定期傭船契約에서 契約當事者인 船舶所有者와 傭船者와의 内部關係, すなれば 相互의 権利·義務와 責任分担등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傭船契約에서 規定하고 있으므로 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契約의 履行中 当事者이 외의 第3者에게 損害를 끼쳤을 때에 船舶所有者 또는 傭船者側의 責任 すなれば 對外的 責任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規定된 바가 없으므로 각 경우에當事者の 地位와 관하여 있는 線項들을 살펴보면 定期傭船契約의 合理的인 解釋와 適用의 차이에 대해서는 定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定期傭船契約의 本質은 傭船契約 자체에 관한 成文法이 能는 한며 그에 대서의 構成으로서 本質과 合致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는 이

23) 林東喆, 上掲論文, 115~118面, 补足

디까지나 실제 이용되는 標準書式의 충실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全體로서의 (as a whole) 契約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가능하
다.³⁾

2. 荷物의 滅失·毀損에 대한 責任

物件運送契約의 目的은 荷物을 良好한 상태로 (in the like good order and condition)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引渡하는 것이므로⁴⁾ 運送人이 運送途中의 荷物의 滅失·毀損에 따른 責任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定期傭船契約이 체결된 상태에서 荷物에 대한 損害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누가 責任을 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定期傭船契約의 目적이 契約當事者인 船舶所有者와 定期傭船者가 船舶의 利用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일정한期間 특정한 船舶에 있어서의 運送人の 義務를 分担하는 것 이므로 荷物에 대한 責任도 分担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⁵⁾

美國의 the Santona事件에서 Charler M. Hough判事는 「船舶은

3) 林東詰, 定期傭船契約과 船舶所有者, 僑船者の 對外的 責任에 관하여, 海法會誌, Vol. 8., No. 1, 1986, 114-115面

4) Caver, op. cit., p. 98.

5) Glenn Bauer, "Responsibilities of owner and charterer to Third parties consequence under time and Voyage charter" Tulane Law Review, Vol. 49, 1975, p. 995 p. 100.

船舶所有者の 所有船이며 船長과 기타 船員은 船行에 관한 모든
事項과 船舶의 航理에 관하여는 船舶所有者の 使用人이다. 그러나
荷物의 수령 및 운도에 관한 모든 事項에 관하여 船長과 기타
船員은 倉船者の 使用人이다. 그리고 裁示하여 아래와 같은
하고 있다.⁶⁾ 즉 아래와 같은 절차는 앞에서 살펴본 定期儲船契約에
서 정한 바와 같이 船海事項과 商事事項을 구별하는 것과는
다른 취지이다. 따라서 倉船者は 倉船契約의 條項에 의하여 荷物
의 管理 및 引渡에 관하여는 모든 事項에 관하여 임시적 船舶
所有者 (pro hac vice)로 되어 本船의 船行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地位에 차지 않고 倉船契約의 明示的 條項에 의하여 船舶所
有者が 責任을 부담하는 當事者の 地位에 차지 된다는 것이다.⁷⁾
荷物의 損害에 대하여 최종적 책임을 船舶所有者 또는 倉船者
中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當該義務의 履行을引受하
자가 누구이 나에 따라 결정한 문제이다. 따라서 海上企業의 主體
인 定期儲船者が 漢送人으로서 漢送契約을 送荷人과 체결하였을 경
우 荷物의 滅失·毀損에 대한 原則的 責任은 倉船者が 차지 된다.⁸⁾ 漢送人인 定期儲船者は 自身의 過失이나 그의 使用人等의
過失에 대하여 荷物에 損害를 입혔을 경우 本港行為에 의해 그
책임을 차지 된다.⁹⁾

6) Clyde Commercial SS., Ltd. v. United States Shipping Co. (The Santona) 152F. 516, 518 (S. D. N. Y. 1907), R. Glenn Bauer, op. cit., pp. 1004 ~ 1005.

7) Ibid., p. 1005.

8) Carver, op. cit., p. 91.

그러나 船舶의 不堪航으로 인하여 運送도중 貨物에 損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船舶所有者가 責任을 부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定期傭船契約에서 船舶의 堪航能力의 유지는 船舶所有者의 義務이기 때문이다.⁹⁾

이에 관한 判例로는 船舶의 推進製置의 軸 (shaft) 이 航海 도중 부리져 航海가 상당히 지연되고 그 결과 運送되던 가축의 사료가 부족하게 되어 체중감소로 상품가치가 떨어져 不堪航이 인정되었던 事件과¹⁰⁾ 船舶에 인접한 船首尾艙 (fore and after peak tank) 의 隔壁의 리벳트가 건조시의 결합으로 빠져 버려 그 구멍으로 海水가 침입하여 貨物을 損傷시키 事件¹¹⁾이 있다. 즉 貨物의 積置 (stowage) 에 관한 船長 또는 士官 기타 使用人의 行爲가 堪航能力에 관한 것이면 船舶所有者가 責任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運送人인 定期傭船者は 運送契約에 따라 特約이 없는 한 貨物은 受領하여 적당히 취급하고 적당히 積置하도록 요구된다.¹²⁾ 따

9) Baltime 第1條, NYPE 第2條 參照。

10) The Caledonia, 157. U. S. 124. (1895).

11) Wuppermann v. The Carib Prince, 170. U. S. 655. (1898).

12) 我妻榮, 海事判例百選(增補版), No. 42. 有斐閣, 1973. 93面

라서 定期傭船者가 不良積置 (bad stowage) 에 따른 責任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Baltim 第 9 條 (船長) 는 「船舶所有者는 貨物의 不足, 混合, 記號 또는 荷物個數, 包裝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하고 또한 不良한 積置 기타로 인하여 발생한 荷物의 損傷 또는 賠償請求에 대하여 責任지지 아니한다.」고 規定하여 價船者의 責任임을 나타내고 있다.

3. 乘務員 및 荷役人夫등의 人命 被害에 대한 責任

人命 被害에 대한 價船者의 責任은 荷物의 損害에 대한 價船者의 責任에 관한 法原則과는 다르다.¹³⁾ 즉 乘務員이나 荷役人夫등의 人命 被害에 대한 不法行爲 事件에 관하여는 定期傭船者가原告에 대하여義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그는 責任을 부담하게 된다. 乘務員이 傷害를 당한 경우에는 價船者를 그 傷害를 당한者的 雇僱主 (employer)로 인정할 수 있을것인가가 문제로 된다.¹⁴⁾ 이것은 定期傭船契約이 船舶賃貸借의 성질을 가지느냐의 여부와 관련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결국 船舶所有者와 價船者사이의 價船契約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실제 使用되고 있는 價船契約書에는 「船舶所有者는 一切의 食糧과 紙料船舶保險料…를 支給하고」¹⁵⁾ 「船舶所有者는 乘務員에 관계된 一切

13.) R. Glenn Bauer, op. cit., p. 1013.

14.) Ibid.

15.) Baltim 第 3 條

의 食糧, 給料 및 屠傭에 관계된 領事官費 등을 支給 하고…」¹⁶⁾라고 규정하고 있어 乘務員의 屠傭은 傳船者의 事項이 아니라 船舶所有者的 事項임을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傳船者는 屠傭主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乘務員의 屠傭과 관련하여 乘務員의 人命被害가 있는 경우에는 屠傭主인 船舶所有者が 責任을 지게 된다.

그러나 乘務員이 아닌 貨物의 船積과 揚荷에 관련된 사람들(예컨대 荷役人夫等)의 損害에 대한 責任은 船積 및 揚荷의 작업에 대하여 傳船者가 責任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통제까지 하고 있느냐가 문제도 된다.¹⁷⁾ 이에 대한 대표적인 判例로는 1916年的 Munson S.S. Line v. Glasgow Navigation Co 사건이 있다.¹⁸⁾ 이 사건에서 위인치 맨(winch man)의 過失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者が 定期傳船者를 상대로 訴訟을 제기하여 損害賠償을 받았는데 후에 定期傳船者は 船舶所有者를 상대로 求償의 訴를 제기하였다. 最高法院(Supreme Court)은 反對의 契約 또는 慣習이 없는 한 揚荷의 의무는 船舶所有者에게 있고 사고당시에 사용되던 定期傳船契約書에도 그 의무는 船舶所有者에게 있다고 判示하였다.

이 傳船契約書에서는 揚荷의 주선과 그 費用의 支拂義務를 傳

16) NYPE 第2條

17) R. Glenn Bauer, op. cit., pp. 1013~1014.; 즉 積荷와 揚荷作業에 대하여 감독책임이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18) Munson SS. Line v. Glasgow Navigation Co., 235 F 64 (2d Cir 1916)

定期傭船者¹⁹⁾ 的 地位에 대한 研究

船者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最高法院은 「揚荷費用을 支拂할 의무는 揚荷를 傭船者의 義務로 하는 것은 아 니다.」라고 判示하였다.

현재 使用되고 있는 NYPE 第 8 條에 따르면 傭船者는 자기의 費用으로 船長의 감독하에 船積, 積置 또는 고르기 (Chart-ers are to load, stow, and trim the cargo at their expens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aptain)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文句에도 불구하고 最高法院은 一貫하여 Munson v. Glaggow 사건의 原則에 따라 NYPE 書式 아래서의 「定期傭船者は 傭船契約書中에 위와 같은 條項에 관계없이 船積 및 揚荷中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責任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判例法上 확립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¹⁹⁾

4. 船荷証券의 發行과 定期傭船者の 責任²⁰⁾

(1) 概說

英美法上 傭船契約(定期傭船契약이든 航海傭船契약이든)에서 傭船者が 동시에 送荷人인 경우에 船舶所有者와 傭船者の 權利關係는 으로 차 傭船契約에 의하여 定하여 지며 船舶証券²¹⁾에 의하여 영향을

19) Wyche v. Oldendorff, 284 F. supp 575 (E. P. Vn. 1967)

Mondella v. SS Elie V, 223F supp 390 (S. D. N. Y. 1963)

Buthuslon v. Central Gulf SS corp, 217F, supp 903 (E. P. pa 1963)

20) 운송계약과 선하증권의 관계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小林友次, 價船契約と 船荷証券の關係, 海運 663號, 海運集會所, 1983.

21) 船荷証券의 성질 및 기능에 관해서는

Ivamy, op. cit., pp. 71 ~ 116 및 Ivamy, Casebook on carriage by

받지 아니한다.²²⁾

1924年 船荷証券一條約 第5條에서도 「…이 條約의 規定은 이 를 僱船契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規定하여 ²³⁾ 船荷証券은 僱船契約과 별개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同 條約 第5條는 계속하여 「…그러나 船舶이 僱船된 경우에 船荷証券이 발행된 때에는 그 船荷証券은 이 條約의 規定에 따른다.(…But if bills of lading are issued in the case of a ship under a charter party they shall comply with the terms of this convention…)」고 規定하고 있다.

한편 僱船者가 船荷証券上의 權利를 第3者에게 移轉하기 위하여 일단 背書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受人은 船荷証券에 僱船契約의 條項에 따른다는 明示的인 條項이 없는 한 僱船契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²⁴⁾

그리고 送荷人이 僱船契約의 存在를 알았다면 送荷人은 僱船者와 契約을 체결한 것이 되며 따라서 僱船者에 대하여 訴를 제기하거나 제기받을 수 있다. 그러나 送荷人이 僱船契約의 存在를 몰랐다면 送荷人の 契約은 船舶所有者와의 契約이 된다.²⁵⁾

Sea, 4th, edition, Lloyd's of London Press Ltd., London, 1979.
pp. 42 ~ 48 참조.

22) Ivamy, op. cit., pp. 71 ~ 72.

23) 1924년 선하증권통일조약 第5條의 내용중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applicable to charter parties …” 한편 영국의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 Article에서도 이러한 규정들을 용선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The provisions of these rules Shall not be applicable to charter-parties…)

24) Ivamy. Ibid, pp. 72 ~ 73.

25) The Berkshire(1974) | Lloyd's Rep. 185. QBP (Admiralty Court)

定期傭船契約關係에서 船荷証券이 發行되는 경우에는 傭船된 船舶의 船長이 署名하여 發行하는 경우와 定期傭船者 또는 그의 代理人이 署名하여 發行한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각 경우의 船荷証券上의 貨物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2) 船長이 署名하여 發行한 경우²⁶⁾

船長은 一般的으로 船舶所有者的 대리인으로 보게 되나 傭船된 船舶의 船長이 船荷証券에 署名한 경우에는 船長은 船舶所有者的 代理人으로 될 수도 있고 傭船者의 代理人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때도 있다.²⁷⁾ 그러나 一般的으로 船長이 船荷証券에 署名하는 것은 船舶所有者が 船長을 통하여 傭船者와 이익을 위하여 送荷人과 契約을 체결한다는 의미이며 船長이 傭船者의 代理人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船長이 傭船契約을 근거로 船荷証券에 署名한 경우에²⁸⁾ 英美法의 입장은 原則적으로 船荷証券에 의하여 立證되는 契約은 船舶所有者와 船荷証券所持人 사이의 契約으로 보며²⁹⁾ 비록 이 契約이 價船者的 이익을 위하여 체결된다 하더라도 船長은 定期傭船者가 대리인으로서 아니라 船舶所有者的 대리인으로서 契約

26) 普通法 (common Law) 하에서는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운송 계약을 맺을 권리인 선하증권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다. Wilford, op. cit., p. 214.

27) Scrutton, op. cit., p. 73.

28) Carver, op. cit., p. 523.

29) 그러나 선장이 선하증권에 서명하여 발행했어도 용선자와의 계약으로 본 것과는 같다. 예컨대, Paterson, Eochainiz v. Elder Dempster (1922) 12 L.L.R. Rep. 69, 71. Carver, ibid, pp. 525 ~ 526.

을 締結 한다는 것이다.³⁰⁾

또한 僱船者는 船長에게 僱船契約의 條件들과 모순된 船荷証券의 署名을 요구할 權利는 없다. 물론 이 문제는 僱船者가 船荷証券의 所持人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僱船契約의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船長의 權限의 범위를 모르고 있는 送荷人 또는 船荷証券의 被背書人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형태의 船荷証券은 船長의 外形上의 權限內에서 船舶所有者를 구속한다.³¹⁾

Baltim 第 9 條(船長)에서는 「…僱船者는 船長이 船荷証券에 署名하여 발생하는 책임이나 결과에 대하여 船舶所有者에게 補償하여야 한다…」고 規定³²⁾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定期僱船契約下에서 船長이 발행한 船荷証券에 대한 責任은 一次的으로 船舶所有者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나 船長의 署名으로 僱船者가 証券上의 責任을 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는 船荷証券上의 文言이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船長의 署名이 船舶所有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一般的 權

30) Wehner v. Dene(1905) 2K. B. 92 이 사건의 내용을 선하증권상의 운임을 받을 권한에 관한 것인데 이 권한은 정기용선자에게 있다는 영미법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상의 未拂僱船料가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용선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

31) Carver, op. cit., p. 536.

32) Baltim의 第 9 條(船長)는 NYPE 第 8 條(船長)의 내용과 유사하다. NYPE 第 8 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That the Captain shall prosecute his voyages with utmost despatch, and shall render all customary assistance with ship's crew and boats. The captain(although appointed by the owners), shall be under the orders and directions of the charterers as regards employment and agency; and charters are to load, stow, and trim the cargo at their expens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aptain, who is to sign bills of

定期傭船者：我的地位에 대한 研究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傭船者の代理人으로서만 署名하는 것이다. 즉 구의 명백한 경우에限한다.³³⁾

(ii) 定期傭船者는 그의代理人이 署名하여 발행한 경우

NYPE 第 8 條에가 「…船長은 제시된 (as presented) 船荷証券에署名하여야 한다.」라는 規定은, 船長은 定期傭船契約에 의하여 傳授된 船荷証券에署名하여 署名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³⁴⁾ Baltimre 第 9 條도 「…船長, 代理인이 船荷証券을 기록 証書에署名하였다거나 또는 이러한 命令에 따라 배물에…이라도 規定하고 있어 船長은 傭船者の 지시에 따라 船荷証券에署名해야 할을 나타내고 있다.

NYPE 第 8 條에 가는 判例의 해석은 船長 자신의署名뿐만 아니라 價船者 자신의 船舶所有者的 대신으로서 船荷証券에署名할 수 있다고 한다.³⁵⁾ 그러나 船長 자신의署名을 한 경우나 價船者 대신이 船舶所有者로 대신으로서署名하는 경우에도 船舶所有者が 船荷証券의 운송에 따른契約上責任을 차는 경우는 확실하다.

船舶所有의 權限으로서 船荷証券을 기록하는 경우는 船舶所有者로서의 船長이 기록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³⁶⁾ 예전에는 價船者가 船荷証券을 발행하는 경우는 확실히

33) 「The cargo is presented in conformity with Mate's or Tally man's record of the receipt of the goods.」은 1906년 9월 1일 제정된 조항이다. (1906 Act, op. cit., p. 217.)

34) Samuel v. West Hartlepool Steam Navigation (1906) 11 Com. Cas. 116 (1906) 124英商法前揭論文, 124頁.

35) The Yorkshire (1974) 1 Lloyd's Rep. 185.

36) R. Glenn Bauer, op. cit., pp. 997 ~ 998.

船舶의 運航에 있어서 價船者는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는 船荷証券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價船者가 자신이 체결한 契約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契約은 貨物이 本船에 수령될 때까지는 價船者에 대해서만 有效하다. 그러나 船長이 알고 貨物이 船積된 경우에는 本船은 荷物에 對한 責任을 지게 된다. 船長이 價船者가 발행한 船荷証券의 條項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貨物에 受領하여 本船을 發航시킨 때는 船荷証券의 條項에 따라 貨物을 運送할 責任을 부담하게 된다. 價船者가 발행한 船荷証券에 관하여 船長이 그 승인을 거부하고 貨物의 船積을 거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貨物을 船積하고 난 後는 船長은 그것을 運送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價船者가 船舶所有者로부터 완전한 權限을 얻어 船荷証券을 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價船契約이 價船者가 船荷証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경우에 價船者가 자기를 위하여 船荷証券에 署名하는 權限을 부여받은 때에는 비록 船荷証券의 어떤 通이 船長에 의하여 署名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船荷証券이 船舶所有者와의 契約이라고 의도되지 않는 한 또한 船舶所有者的 이름을 記載하지 않는 한 船舶所有者は 責任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船舶所有者が 價船者의 예정된 航路로부터 離路하도록 本船에 명령을 하 것에 의하여 船舶所有者が 價船者の 本船 運航에 간섭하게 되었다면 船舶所有者は 價船者の 船荷証券에 의하여 責任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定期價船者 자신이 船荷証券上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즉 價船者 또

는 그의 代理人이 「船長에 갈음하여 (for the master)」³⁷⁾署名하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 船荷証券에署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船荷証券의 文言 및 주위의 사정에 비추어 運送契約은 船舶所有者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僱船者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³⁸⁾ 定期傭船者 자신이 定期船航路配船의 船舶所有者나 혹은 航路運航者 (operator)이고 航路配船의 並강을 위하여 당해 船舶를 定期傭船한 경우가 특히 이에 해당할 것이다.³⁹⁾

5. 船舶의 衝突에 따른 責任

船舶의 衝突에 따른 損害賠償의 청구는 통상 상대방의 船舶所有者에 대하여하게 된다.⁴⁰⁾

그러나 定期傭船契約에 있어서 衝突과 같은 不法行爲에 따른對外的 責任은 定期傭船者가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일본의 문제는 定期傭船者の 法的 地位를 어떻게 파악

37) 실제로 해운실무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정기운송하는 경우에 전기록부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船長에 갈음하여 (for the master)」라고 하면서 지명학습을 위임하는 대로 네리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특히 이에 밝혀둔 대리인 소장과 같은 한 종류에서는 그의 대리인이 「船長에 갈음하여 (for the master)」선박증권에 서명하는 경우에 정실히 위임과 관계없이 선박소유자를 구별하는 權限 (vested authority)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Wilford op. cit., p.216.

38) 林東誥, 前掲論文, 124面

39) Wilford, op. cit., p. 219

40) 稲井玲二, 定期傭船契約의 不法行爲責任 (一), 海事產業研究所報, No.245 1986.11. 83面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定期傭船契約을 일종의 運送契約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船舶所有者가 責任을 부담하게 되지만 定期傭船者의 企業主體性을 강조하거나 日本의 判例의 태도와 같이 船舶賃貸借와 勞務供給契約이 결합된 混合契約說을 취하게 되면 定期傭船者가 責任을 부담하게 된다.

英國의 判例에 따르면 「傭船者가 指示하는 港에 航行하는 도중에 本船이 얼음(ice) 또는 다른 위험에 부딪혀 本船이 損傷을 입어도 그 港이 傭船契約에 의거하여 違法하게 (legitimately) 指示된 港인 경우에는 傭船者는 그 損傷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⁴¹⁾ 한다. 또한 美國의 判例에서도 衝突에 있어 비록 그 당시 傭船者 자신의 荷物 管理人(super cargo)이 그 船舶을 導船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定期傭船者는 責任을 질 수 없다⁴²⁾ 고 한다.

定期傭船契約書의 이른바 使用約款⁴³⁾(employment clause)은 積荷의 종류, 積荷港의 지정등을 傭船者의 처분(at the charterer's disposal)에 맡겨 傭船者가 지정하는 運送을 行하는 定期傭船契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條項으로 해석된다⁴⁴⁾ 또한 使用約款은 本船의 航行(navigation) 또는 航行에 부수하여 생긴 사고(accidents of navigation)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이는 船舶所

41) Linnerich SS. Co. v. Stott (1921) 2 K. B. 613.

42) The Volurd, 181 F. 643.(2d Cir., 1910)

43) Baltimre 第9條, NYPE 第8條

44) 林東誥, 前揭論文, 126面

有者の 責任으로 존속한다.⁴⁵⁾ 즉 約款을 분석하여 보면 定期傭船契約에서 本船의 船長 및 기타 船員은 船舶所有者が 雇傭하여 그費用을 부담하고 船舶所有者は 船長을 대리인으로 하여 本船의 占有 및 支配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使用人들의 故意·過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第3者에 대한 衝突責任, 즉 本船의 堪航能力, 安全등 航行(navigation)에 관한 책임은 船舶所有者が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英美法은 船舶衝突에 따른 不法行為責任은 定期傭船者가 아니라 船舶所有者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英美法이 定期傭船契約을 광의의 傭船契約의 일종으로 다루어 航海傭船契約과 같이 定期傭船者의 船舶에 대한 占有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한편 日本의 경우는 定期傭船契約을 混合契約으로 보면서 船舶賃貸借에 관한 條項(日本商法 第704條)을準用하여 衝突등에 따른 不法行為責任은 定期傭船者가 부담한다고 해석하였다.⁴⁶⁾ 이에 대한 최근의 判例로는, 日本의 한 海運會社가 Baltimme書式에 의거하여 定期傭船한 Liberia船籍의 船舶이 사고 당일 당직사관이었던 일등항해사와 船長의 過失로 인하여 日本 어선과 衝突한 결과 어선원의 死亡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定期傭船者の 第3者에 대한 對外的 責任을 인정한 것이 있다.⁴⁷⁾ 이 判決은 日本

45) Scrutton, op. cit., p. 375.

46) 平家眞, 定期傭船者の 衝突責任, 海法會誌, 復刊 第30號(通券 第59號), 勁草書房, 1986, 119面

47) 이 사건이 아트라 “フルムーン”(Fullmoon)號 사건이다

判例의 흐름과 같은 것이나 實務界와 一部 學者들 사이에는 세 계적인 海運慣行에 反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즉 이러한 비판적 견해들은 定期傭船된 船舶의 衝突로 인한 對外的 責任은 船舶所有者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英美法上의 해석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船舶 所有者가 堪航能力注意義務를 부담하고, 船舶의 衝突은 航海技術上의 문제이므로 船員의 雇傭主인船舶所有者가 당연히 責任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比較法的으로 살펴보면⁴⁸⁾ 노르웨이法上 衝突損害에 대한 責任은 船舶所有者가 부담하고 定期傭船者는 부담하지 않는다.(노르웨이 商法 233條). 또한 소련海商法上으로도 定期傭船者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소련 海商法 第 183條 참고). 프랑스의 判例에 따르면 定期傭船者는 航海上의 過失에 따른 衝突事故에 있어서의 損害에 대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判例는 一貫하여 定期傭船者는 衝突責任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고 學說도 대체적으로 이에 따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定期傭船者에게 運送人의 地位

이 사건의 개요와 판결이유 및 비판에 관하여는.

萩原正參, 定期傭船契約, 502-503面 및 櫻井珍二, 前掲論文, 85-87面
中村貞澄, 使宣置籍船の 海難事故と定期傭船者の 責任, ヴェリスト N.569
1974. 9. 1. 127-127面 참조.

48) 정기용선자의 충돌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관해서는,
平塙貞, 前掲論文, 102-122面 참조.

는 인정하고 있지만 船長 및 기타 船員의 過失로 인한 船舶衝突의 결과 발생한 對外的 責任에 대하여는 船舶所有者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결국 船舶衝突은 傭船者의 運送物의 管理와 관계없는 航海技術上의 문제이므로 船舶衝突로 인한 對外的 責任은 船舶所有者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定期傭船者를 船舶儀裝者로 보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學者들은 定期傭船者가 舟社의 굽등표지 (funnel mark) 를 하고 舟社의 社旗을 세우하는 등으로 第 3 者에게 마치 船舶所有者 또는 船舶負借人과 같은 外觀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바 “表示信賴의 法則” 이라고 外觀을 존중하는 견해가 有力하다. 프랑스의 경우는 1966年海商連送契約法에 의하여 定期傭船契約을 英美의 觀點과 같이 裸海賸船契約 및 裸傭船契約과 구분하고 있다. 또한 海賸事和 해事事項을 구분하여 當事者사이에서는 前者에 관하여는 船舶所有者가 責任을 지고 後者에 관하여는 定期傭船者が 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定期傭船에 대한 學說의 對立이 가장 심하다. 定期傭船契約에 대한 學說은 連送契約説, 混合契約説, 特殊契約説, 禁反言説, 類型説, 船舶賃貸借説, 企業賃貸借契約説, 海賸, 商事區別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類型説, 海賸, 商事區別説, 禁反言説, 連送契約説을 제외하고는 定期傭船者에 船舶負借人로 地位를 인정하여 第 3 者에 대한 責任을 負担시키는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主要觀點上 定期傭船者の 地位를 分析하여 보면 이를바 使用觀點에서는 船舶의 航行 (navigation) 에 관하여는 船舶所有者가 責任을 지고 船員이 되어 商業上の 航海 (voyage) 에 관하여는 定期傭船者が 責任을 負担하는 롤을 한다. 즉 定期傭船契約은 船舶負借契約과 같이 定期傭船者が 船舶을 貸借하는 것이 아니라 船舶所有者が 提供한 船員이 맡은 船舶을 일정기간 定期傭船者が 使用, 收益하는 契約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定期傭船자는 商業上の 航海에 관하여는 諸費用을 負担하

고, 期間을 기준으로 한 僱船料들 船舶所有者에게 支給하여야 하며 安全港 (safe port) 만을 使用해야 할 義務 및 僱船期間이 만료되면 引渡받은 때와 같이 양호한 상태로 船舶을 返還해야 될 義務등이 있다.

具體的 事例를 통한 定期僱船者의 對外的 責任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貨物의 멸실·훼손등이 船舶의 安全 및 堪航能力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運送人인 定期僱船者가 그 責任을 부담해야 하며, 둘째 승무원 및 하역인부등의 人命被害에 대한 責任을 보면, 승무원의 履用은 船舶所有者가 하므로 이들의 人命被害責任은 船舶所有者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貨物의 船積 搭荷와 관련한 하역인부들의 責任은 비록 僱船者가 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船舶所有者의 責任으로 보는 것이 英美判例의 경향이다. 셋째 船荷証券의 發行과 관련한 定期僱船者의 對外的 責任은, 船長이 僱船者를 위하여 서명하여 발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船長은 船舶所有者의 代理人이므로 船舶所有者가 責任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定期僱船者 또는 그의 代理人이 서명하여 船荷証券을 발행한 경우에도 船舶所有者가 責任을 부담하게 되나 “船長에 갈은하여” (for the master) 시명하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에는 僱船者가 그 責任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넷째 船舶의 衝突과 관련한 定期僱船者의 對外的 責任은 거의 모든 나라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船舶의 衝突은 船舶所有者가 고용한 船長 기타 船員의 航海技術上의 過失에 의한 것이므로 船員이 딸린 船舶을 사용하는 定期僱船者는 責任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를 밝히기 위하여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을 고찰하고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標準書式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判例를 통한 구체적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1) 標準約款의 分析을 통한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의 규명
현재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標準約款들을 分析하여 볼 때 混合契約說이나 船舶賃貸借說, 特殊契約說과 같이 定期傭船契約에 대하여 貸貸借性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定期傭船契約은 船舶所有者가 船員 및 船舶을 價船者에게 貸貸하는 것이 아니라 船舶所有者가 雇用한 船員이 승선한 船舶을 일정 期間 價船者에게 使用·收益토록 제공(service의 제공)하고 價船者는 그 대가로 일정한 期間을 기준으로 한 價船料를 支給하는 契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船舶의 貸貸借性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通說인 混合契約說이나 特殊契約說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이는 定期傭船契約의 本質을 짚는 이해 관계자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標準約款을 分析하여 보면 定期傭船者의 海上企業主體性이 본인되는 것은 아니다. 즉 定期傭船者는 運送의 主體가 되며, 船舶所有者는 契約內容에 따라 가능할 船舶을 定期傭船者에게 使用·收益토록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을 船舶所有者的 責任負擔部分

과 定期傭船者의 責任負擔部分이 二分된 運送契約의 形태로 이해 할 수 있다.

(2) 定期傭船者의 對外的 責任

대부분의 나라가 定期傭船契約에 대한 成文法規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成文法規가 있다고 하여도 그 자체가 任意法規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合意가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는 추상적인 개념속에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標準約款등 契約內容의 올바른 해석에 따라 결정되어 져야 하는데, 먼저 定期傭船者와 船舶所有者의 관계는 契約 내용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對外的 관계에서는 明文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定期傭船者의 法的 地位의 정립이 쉽지 않다. 이에 관한 대부분의 學說은 英美의 判例나 海運實務界的 견해와는 달리 定期傭船契約을 貸貸借契約에準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定期傭船者에게 船舶賃借人の 地位를 인정하고 對外的 責任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標準約款의 내용 및 英美의 判例를 分析하여 보면 定期傭船者를 船舶賃借人과 같은 地位로 보기는 어렵다. 즉 定期傭船者와 船舶所有者は 각각 責任을 부담하는 부분이 다른데 船舶所有者は 船舶의 航行(navigation)과 관련된 船舶의 安全 및 塾航能力을 유지해야 하며, 僑船者는 商業上의 航海(voyage)와 관련한 責任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標準約款 및 英美의 判例를 중심으로 하여 定期傭船者의 對外的 責任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定期租船者와 的地位。研究

- ① 船舶의 衝突등 船舶의 運航과 관련한 責任과 堪航能力의
부족은 원인으로 하여 發生한 損害 및 乘務員등의 人命被害에 대
한 責任은 船舶所有者가 부담한다.
- ② 貨物의 船積 및 揚荷 등 운송과 관련된 商業上의 管理에 대
한 責任은 定期租船者가 부담한다.
- ③ 損害의 발생 원인이 航海上의 管理인지 商業上의 管理인
지 분명화한 경우와, 양자 모두가 損害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連
帶責任을 묻는 方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戶田修三, 海商法, 東京, 文眞堂, 1979

(2) 論文其他

金亨道, 海上物件運送人의 堪航能力注意義務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大學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8

朴容燮, 海商法改正을 위한 立法政策上의 問題와 改正試案例, 韓國航海學會誌, 제 9 권 제 1 호, 韓國航海學會, 1985

朴容燮,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 海洋韓國, 韓國海事問題研究所, 1988. 4~6 月號

裴炳泰, 海運約款에 관한 法理論 研究, 延世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6

裴炳泰, 海商法改正을 위한 定期傭船契約法 構成의 示唆, 韓國海法會誌, 제 8 권 제 1 호, 韓國海法會, 1986

裴炳泰, 1976 年 海事債權에 대한 責任制限條約의 研究, 韓國海洋大學 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 13 輯, 1978

裴炳泰, 船舶擔保物權에 關한 比較法的 研究, 서울, 延世大, 1973
船協會報, 제 15 호, 韓國船主協會, 1986. 6

梁承圭,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 서울대 法學研究所, 法學 9 卷 2 號, 1967

李在雄, 할부르크 규칙과 韓國商法의 比較研究, 상사중개 연수 叢書 第 21 輯, 大韓商事仲裁院, 1980.12

林東喆, 定期傭船契約上 船主의 擔保義務에 關한 考察, 建國大學校 大學院 論文集(第 20 輯), 1985

林東喆, 定期傭船契約上 船主, 僑船者의 對外的 責任에 關하여, 韓國海法會誌, 제 8 권 제 1 호, 韓國海法會, 1986

林東喆, 소련 海商法典의 概要와 特色, 韓國海法會誌, 제 9 권 제 1

戶田修三, 海商法, 東京, 文眞堂, 1979

(2) 論文其他

金亨道, 海上物件運送人の堪航能力注意義務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

大學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8

朴容燮, 海商法改正을 위한 立法政策上の 問題와 改正試案例, 韓國

航海學會誌, 제 9 권 제 1 호, 韓國航海學會, 1985

朴容燮,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 海洋韓國, 韓國海事問題研究所,

1988. 4~6 月號

裴炳泰, 海運約款에 관한 法理論 研究, 延世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6

裴炳泰, 海商法改正을 위한 定期傭船契約法 構成의 示唆, 韓國海法會誌, 제 8 권 제 1 호, 韓國海法會, 1986

裴炳泰, 1976 年 海事債權에 관한 責任制限條約의 研究, 韓國海洋大學 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 13 輯, 1978

裴炳泰, 船舶擔保物權에 關한 比較法的研究, 社會, 延世大, 1973

新協會報, 제 15 호, 韓國船主協會, 1986. 6

尹承善,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 在昌浦 法學研究所, 法學 9 卷 2 號, 1967

李在輝, 1980 年 海商法典 比較研究, 伸大商法 學系 著書 第 21 號, 大韓商事年報院, 1980.12

林東基, 定期傭船契約上 船主의 擔保義務에 關한 考察, 延國大學校 大學院 論文集(多學科), 1985

林東基, 定期傭船契約上 船主, 傳船者와 對外의 責任에 關하여, 韓國海法會誌, 제 8 권 제 1 호, 韓國海法會, 1986

林東基, 소련 海商法典의 概要와 特色, 韓國海法會誌, 제 9 권 제 1

立, 韓國海法會, 1987

林東喆, 裴炳泰外, 海商法 改正에 관한 研究, 韓國海事問題研究所,
1986

黃錫甲, 定期傭船契約上 오프하이어 條項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大
學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2

落合誠一, 運送法の課題, ツエリスト, 有斐閣, No. 875, 1987. 1-15

櫻井玲二, 定期傭船契約と不法行爲責任(一), 海運產業研究所報, No.
245, 1986.11

櫻井玲二, 定期傭船契約と不法行爲責任(二), 海運產業研究所報, No.
249, 1987. 3

櫻井玲二, 定期傭船契約と不法行爲責任(三), 海運產業研究所報, No.
255, 1987. 9

小林友次, 僱船契約と船荷證券の關係, 海運 663 號, 日本海運集會所, 1983

平塚眞, 定期傭船者의 衝突責任, 海法會誌, 復刊 第 30 號(通卷 第
59 號), 動草書房, 1986

鴻常夫, フランス 新海上運送契約法(一), 法學協會雜誌, 第 84 卷,

2. 西洋書

(1) 單行本

Astle, W.E., *Limitation of Liability*, London, Fair play Publication,
1985.

Astle, W.E., *Shipowner's Cargo Liabilities & Immunities*, 3rd
ed., H.F. & G. Witherby Ltd., 1982.

- Clive M. Schmitthoff, David A. Godwin Sarre, *Mercantile Law*,
London, Stevens & Sons Limited., 1960.
- Collected Maritime Law*, the Marine Claims Department, The Tokyo
Marine & Fire Insurance Co. Ltd., Tokyo Seizando-shoten
Publications, 1973.
- Gilmore & Black Jr., *The Law of Admiralty*,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1979.
- Hans Jürgen Abraham, *Das Seerecht*,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69.
- Ivamy, E.R.H., *Casebook on Shipping Law*, 3rd ed., London,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2.
- Ivamy, E.R.H., *Casebook on Carriage by Sea*, 14th ed., London,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79.
- Michael Willford, Terence Coghlan, Nicholas J. Healy, Jr., John
D. Kimball, *Time Charters*, Second ed., London,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2.
- Macattee, Mustill Boyd, *Service on Charterparties & Bills of
Lading*, 18th ed., London, Sweet & Maxwell, 1984.
- Netherlands Shipowners Association, *Netherlands Maritime Law
(Commercial Code, Second Book)*, Hague, 1960.
- Raoul Colinvaux, *Carrer's Carriage by Sea*, 13th ed., London,
Stevens & Sons, 1982.
- Tappenberg, M., *Handbuch der Seerechte*, Bd. III., München, 1918.

Payne & Ivamy, *Carriage of Goods by Sea*, London, Butterworths,
1985.

Plino Manca, *The Italian Code of Navigation*, Milano, Dolt. A.
Givffré, 1958.

Schaps-Abraham, *Das See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mmentar und Materialsammlung, vierte völlig neu
bearbeitete Auflage, Walter de Gruyter, Berlin, 1978.

The Gothenburg Maritime Law Association, *The Swedish Maritime
Code*, Stockholm, 1982.

William E. Butler & John B. Quigley, Jr., *The Merchant Shipping
Code of USSR (1968)*, The John Hopkins Press, Baltimore
& London, 1970.

Wünstendörfer, H., *Neu Zeit liches Seehandelsrecht*, 12. Aufl,
Tübingen, Verlag, JCB Mohr, 1950.

(2) 論文其他

Byoung Kook Min & James M. West,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Journal
of Maritime Law & Commerce, Vol.16, No.1, Jan, 1985.

Journal of Maritime Law & Commerce, Vol.17, No.4, Oct. 1986.
Lloyd's Law Reports, Vol.2, 1985.

Lloyd's Maritime & Commercial Law Quarterly, August, 1984.

R. Glenn Bauer, *Responsibilities of owner & charterer to
third Parties Consequences under time & voyage Charter*,
Tulane Law Review, Vol.49, 1975.